

Q&A로 본

베트남 투자 A to Z



머 리 말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KOTRA는 우리기업들이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해 주고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호치민('06.6)과 하노이('07.5)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세무, 회계, 통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우리기업의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고문컨설턴트들이 그동안 우리기업들과 현장상담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원격지 상담을 하면서 제공했던 생생한 정보들을 다른 진출기업이나 진출 추진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Q&A로 본 베트남투자 A to Z'**라는 자료로 엮었습니다. 2006년에도 동종의 자료를 발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작성한 정보를 대폭 보강했고 아울러 개정된 법규 및 최근의 급변하는 베트남 투자여건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문가들이 전면 재감수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위험설이 떠돌고 있습니다만 베트남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경험 및 투자협력 대상국입니다. 베트남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지만 극단적인 외환위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고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견해

가 우세합니다. 베트남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높고 한·베트남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추세도 지속될 것이며 우리기업 투자진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베트남이 앞으로 적어도 3-4년간은 계속 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투자 형태별 및 절차별 문의사항에 대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한 질의응답(Q&A)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함으로써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료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KOTRA 호치민 무역관 안유석 과장과 하노이 무역관 박근형 차장, 한윤주 변호사님, 최준 회계사님, 호치민 총영사관 장근섭 노무담당 영사님, 대한통운국제물류 문성수 이사님, 주베트남 대사관 유성용 건교관님, 외환은행 하노이지점 홍정렬 부지점장님, 셀라인 정광렬 지사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

KOTRA Global KOREA 본부장

민경선

Contents

I. 법인설립 절차 및 운영

1. 투자총액과 법정자본금 등 베트남내 법인설립에 적용되는 자본금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21
2.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나요? / 22
3. 2006년 7월 1일 부로 개정된 투자법 및 기업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4. 현행 기업법 상 베트남에 설립 가능한 회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회사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5
5. 베트남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28
6. 베트남에 100% 외국투자기업 설립 시 접수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30
7. 투자장려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31
8. 수상의 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34
9. 투자신청서 접수기관 및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35
10. 부동산개발은 조건부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37
11. 베트남에서 무역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40
12. 베트남에 기 진출한 기업입니다. 개정 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재등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41
13. 토지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 47
14. 베트남은 서비스업의 투자개방에 대하여 아직 미온적인 상태

로 알고 있습니다. WTO와 맞물려 업종별 개방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50

15. 투자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59
16. 법인설립 후의 수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60
17. 베트남 투자 시 공단지역과 공단 외 지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60
18. 건설업(사무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베트남회사와 합작투자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62
19. 베트남에 기 진출한 기업입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허가를 받은 분야와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63

II. 자본금납입, 증자, 감자, 지분참여

1.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 67
2. 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 67
3. 증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69
4. 감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70
5. 지분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71
6. 지분을 넘길 때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72

III. 대표사무소 설립

1.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설립 신청서 접수기관 그리고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75
2.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등록 조건이 있나요? / 75
3.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경우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과 현지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각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76

IV. 세무, 회계

1. 설비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면세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 83
2.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지요? / 85
3. 베트남에서는 기업에 경리장(Chief Accountant)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요? 외국인도 경리장을 맡을 수 있나요? / 86
4. 법인세는 몇 %이며 본사 송금 시 문제는 없는지요? / 87
5. 베트남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이 부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87
6.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 88
7. 베트남어로 번역이 필요하여 전문 번역원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이를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89
8. 한국의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법인에 용역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또한 계약서 상 원천징수세의 부담자가 불분명한데, 계약당사자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89
9.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 비용 중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절세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등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90
10. 한국에서는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회계감사 수수료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 91

11. 우리 회사는 금년 11월에 설립하여 첫 사업연도가 채 2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 92
12.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얼마나 내야하는지, 또한 기타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93
13.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94
14.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마케팅 활동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등의 계산시 어떠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94
15.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요? / 95
16.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 97
17. 원부자재 수입통관시에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97
18. 수입물품을 사정상 다시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입관세 및 관련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7
19.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관세특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98
20. 베트남의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99
21.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을 향후 5년간 공제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요? / 100
22. 투자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많다면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00
23.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무관세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

- 는 무엇인지요? 또한 사후절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 101
24. 소요량 증명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2
 25.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한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103
 26. 수출용 원부자재를 최종 수출기업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저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103
 27. 베트남에서 골프회원권 및 rounding fee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104
 28. 2009년도부터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가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소득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4
 29. 베트남 주요 조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105
 30.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이 아니므로 직원의 소득세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하는 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세무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106
 31. 당사는 한국의 건설회사로서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것은 아니며, 현장만 개설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한 후에 공사비를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 107

V. 노무

1. 베트남의 법정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며, 실질적인 공장근로자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 111
2. 최근 임금등급간에 5%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112

3. 베트남 하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많이 거론합니다. 실제로 인력이 풍부하고 우수합니까? / 113
4.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 115
5.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115
6. 법정 노동시간,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며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116
7.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 118
8. 베트남에서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19
9. 한국의 4대보험 같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고용주세의 내역은 어떻게 되며 지급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121
10. 한국인 관리자 또는 기술자가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122
11.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노조는 우호적인지요? / 124
12. 베트남에서도 파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최근 노사분쟁 현황은 어떤지요? / 125
13. 파업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126
14.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27
15.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128
16. 취업규칙이 무엇인지요? / 130
17. 약 1000명 정도 고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 / 132
18. 직원 복지시설(예: 기숙사 설립) 지원은 의무사항인지요? 현지에서 평균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 132
19. 베트남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33
20.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직원 관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135

VI. 수출입/통관

1. 베트남의 제조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장설비용 기계의 경우 면세처리가 되나요?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139
2. 중고 설비를 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139
3. 원부자재를 수입코자 합니다.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140
4. Under Value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142
5. 이사회물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143
6. 베트남은 같은 제품 수입시에도 항구마다 담당 세관원마다 관세를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 143
7. 통관 관련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통관을 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 143
8. 소요량 증명을 잘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 144
9. 통관 시 세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 144
10. 면세로 수입된 기계장비중 일부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 후 재수입하려고 합니다. 추가 면세수입이 가능한지요? / 145
11. 면세로 수입된 공장설비용 기계류를 현지사정으로 인해 타사로 인도 및 판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계류의 인도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145
12. 초기 투자업체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를 받지 못하여 세금을 내고 수입한 후 이의 가공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146
13. 자재를 수입하려고 관할 세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해 화물의 수량이 늦었고, 나중에 화물을 수령하고자 하니 수입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가요? / 146

14. 일부 품목의 수입은 사전에 베트남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 147
15. 수입된 화물을 부두에서 운송하는데 시내 통행제한시간에 걸려 화물이 제때 운송이 안 되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물차의 통행제한시간이 있나요? / 147
16. 호치민시 외곽에 위치한 투자업체입니다. 화물 수입 검사가 공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늘 관할세관 검사장에서 검사한 후 화물이 공장으로 이송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모로 불편이 많습니다. 검사를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148

VII. 금 융

1.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151
2. 해외송금액의 제한은 없습니까? / 152
3. 베트남 현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서류, 처리기간 등) / 153
4.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개인과 법인의 대출, 예금 금리 등) / 155
5. 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품목과 담보 한도는? / 156
6. 베트남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으며, 현지 은행과 거래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157
7. 베트남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요? / 158
8.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지요? / 159
9. L/C 개설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 160
10. 대미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중앙은행 환율관리제도) / 161
11. 달러계좌에 있는 달러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할 수 있지만, 베트남 동화는 미 달러로의 환전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사업정리 또는 근무기간 종결에 따라 베트남을 떠날 때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동화는 모두 소비할 수 밖에 없는지요? / 162

12. 금융소득(주식 양도차익, 예금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163
13. 은행(현지은행, 외국합작은행, 한국은행지점)에서 지급보증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발행 요건은 무엇인지요? / 164
14. 베트남에서 금융회사를(은행, 보험, 증권 등) 설립하려면 베트남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64
15.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금융시장이 양허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는데, 금융분야별 현재의 제한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방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166
16.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요? (진출형태, 규모, 진출연도, 지분율 등 기본정보 포함/하노이, 호치민 전체) / 167
17.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요? (진출형태, 규모, 진출연도, 지분율 등 기본정보 포함/하노이, 호치민 전체) / 169
18.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베트남 정부가 각종 긴축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170
19. 베트남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은? / 171
20. 베트남에서 은행거래시 베트남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172

VIII. 토지, 건축, 임대

1.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토지소유와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소유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177
2.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 소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 178

3. 외국인 기업이 베트남에서 건설 또는 건축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177
4. 토지 사용기한 만료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78
5. 토지 사용기한 내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으로의 재양도가 가능한지
요? / 179
6. 외국인(기업)의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이 있는지요? / 180
7. 건설·건축사업 추진 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 180
8. 베트남 주요 건설업체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 181
9. 토지 및 건축물 담당 국가기관은 어디인지요? / 183
10. 투자허가 시 받은 공장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수
익을 올릴 수 있는지요? / 183
11. 투자허가시 받은 공장부지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
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184
12. 건물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나 지분참여를 통한 부동산 투자
가 가능한지요? / 184
13. 베트남의 건설프로젝트의 하청계약을 맺은 경우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형태로 시공 또는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PMO를 세우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고 업무범위는 어떻
게 되는지요? / 185
14. 베트남의 공시지가는 언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186
15. 토지 및 건물사용(장기임차) 등 토지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요? / 186
16. 베트남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은? / 187
17. 베트남의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거래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지요? / 188
18.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절차, 담당부서, 대략적인 소

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188

19. 하노이시의 경우 미딩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베트남 주요 지역의 개발계획 및 각종 인프라 계획을 파악하려면 어디를 접촉해야 하는지요? / 191
20.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91
21.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으로부터 건설허도급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 192
22. 베트남에서 진행중인 우리나라 기업의 건설프로젝트 현황은? (회사명,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내용(아파트, 사무건물, 리조트 등), 규모, 투자형태, 진행상태 등) / 193

IX. 베트남 내 거래, 내수

1.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97
2.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요? / 198
3. 베트남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요? / 198
4. 베트남 내 거래 시의 주요 대금지불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금, 외상 등) / 199
5. 베트남 내 로컬 L/C 개설이 가능한지요? / 200
6. 베트남 바이어의 영업상태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200
7. 베트남 내의 주요 물류 운송수단은 무엇이며 하노이?호치민간 운송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201
8. 베트남 내 거래 시, 유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202

9. 외국기업의 지사나 현지법인이 베트남 공기업이나 정부의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지요? / 204
10. 국제입찰에 있어서 베트남기업과 외국기업간에 가격조건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요? / 204
11. 내수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접대문화는? / 205
12. 내수거래 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206
13. 세관 및 수입관세에 대한 정책은 어떤지요? / 207
14. 베트남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 208
15. 베트남으로 수입시 품질(안전)검사가 필수적인 품목은 무엇인지요? / 208
16. 베트남에도 인증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인증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의 인증서가 베트남에서도 인정되는지요? / 209
17. 베트남에서 계약서는 주로 베트남어본을 기본으로 한데, 영어로 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지요? / 210
18. 베트남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211
19. 베트남 내수시장의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요? / 211
20. 베트남은 인접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와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요? / 212
21. 베트남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소비계층의 분화가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소비계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요? / 212
22. 한국과 베트남(아세안)은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반대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

- 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 213
23. 베트남으로 중고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 품목과 수입 요건은 무엇인지요? / 214

X. 투자기업의 청산, 투자금의 회수

1.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19
2. 외국인투자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219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20

I. 법인설립 절차 및 운영

답변자: 법무법인 로고스

한윤준 변호사

(joon19@gmail.com)

질 의

1. 투자총액과 법정자본금 등 베트남내 법인 설립에 적용되는 자본금 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과거 외투법하에서는 자본금 규정이 투자자본금, 법정자본금, 대출 자본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자본금으로 복잡하게 분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 기업법 및 신 투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일단 회사의 자본금은 실제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직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에 충분할 정도의 자본금을 뜻하는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과 추후 회사가 확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정관상 증자를 예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투자자본금(Investment Capital)” 등 두 가지에 대하여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즉, 현물 및 현금 투자를 막론하고 초기에 투자하시는 자본금은 모두 정관 자본금으로 편입되게 되며(베트남내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제도는 아래에서 설명되는 법정자본금이 적용되는 특별한 사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정관 자본금의 3~4배 되는 금액을 투자자본금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금융업, 기타 부동산 경영업 등 특수분야의 회사 설립 시에 최소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예를 들면 20 헥타르가 넘는 주거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60억동 이상, 증권회사의 경우 2천만불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함) 향후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이 경우에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 의

2.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나요?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같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이 충분한지 여부만을 회사설립 승인 시 검토하게 됩니다(정관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동안 회사의 각종 운영비(임대료, 임금, 원료수급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수한 사업분야의 경우(보험업, 금융업, 임대목적 부동산 사업)에는 각 특별법 혹은 시행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자본금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1항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질 의

3. 2006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투자법 및 기업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도 베트남투자자와 동일하게 베트남기업법상 모든 종류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혹은 조약으로 규정된 투자금지분야 혹은 조건부 투자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외국인이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설립 절차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사안들이 간단하고 명

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설립(투자허가) 절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지역에 따라 시(성) 계획투자국(DPI) 혹은 시(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BOM) 중 한 곳에 신청하기만 하면 모든 투자절차가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투자법에서는 합작투자 시 만장일치제라는 독소조항이 있었으나(즉, 베트남측 지분이 10%만 있다 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 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음), 개정 투자법, 기업법에서는 만장일치제가 폐지되었고, 통상 65%이상 지분 보유 시 주요 의사결정을 대주주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관련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

차이점	구 법(舊法)	신 법(新法)
목적	2006년 7월 1일 전에는, 즉 새로운 투자법과 기업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외국 회사는 외투법에서 정한 회사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음	2006년 7월 1일자로, 외국 기업도 기업법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회사를 베트남기업과 동일하게 설립할 수 있음
투자 승인 허가서(IC)를 발급하는 기관	투자 승인 허가서(IC)를 발급하는 기관 - 3개의 기관: 중앙정부 계획 투자부(MPI); 지방정부 계획 투자국(DPI); 지방정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BOM) - 투자 자본금(미화 1000만 불 이하)과 관련하여 성이나 시 정부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함	- 2개의 기관: 지방정부 계획투자국(DPI)과 지방정부 산업단지관리위원회(BOM) - DPI와 BOM은 투자승인 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의 발급을 위해 수상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업에 한해서 IC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

차이점	구 법(舊法)	신 법(新法)
		- 중요한 사업은 투자 자본금에 상관없이, 또는 투자 자본금이 1조5000억 VND 이상(93,750,000 USD)인 사업일 경우, 수상의 승인이 필요 (목록은 투자법 참조)
투자 승인 허가서 취득 절차	- 평가 또는 등록 - 투자자가 직접 투자 승인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더욱 간단해 짐 - 평가 또는 등록 - 조건부 프로젝트 혹은 수상의 비준이 필요한 프로젝트지도 계획투자국 혹은 관리위원회에 투자 승인 허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
투자 형태	베트남 정부가 국내 회사(공공 전자 통신: 방송: 교통: 운송업 서비스 등)를 통제 또는 보호하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업종의 경우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합작회사의 형태로 투자하여야 함	정해진 투자 형태는 없음. 그러나, 여전히 조건부 프로젝트, 특히 서비스업(유통, 물류, 문화산업 등)의 경우에 합작 필수 사항 존재(WTO Schedule이나 각 세부법령 확인 필요)
정관자본 법정자본	- 제한: 외국 기업의 법정자본은 최소한 총투자자본의 30%를 차지해야 함 - 기존법에서는, “법정자본금”이란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뜻함 - 외국 투자법 제16조에서,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것은 금지하였음	- 제한 없음: 투자법의 어느 조항과 시행령 No.108에도 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 신규법 하에서, 투자자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을 “법정자본금”이란 개념대신 “정관자본금”으로 표현 - 정관 자본의 감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단, 1인유한회사의 경우 규제조항 있음)

차이점	구 법(舊法)	신 법(新法)
만장일치 승인조건	외국인투자법의 제14조에 따르면, 합작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즉 대표이사의 임명과 면직, 합작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추가 사항 등은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	<p>- 만장일치 승인 필수사항 삭제. 이는 기업법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주주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없음. 중요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주주)이 정관 자본의 최소 65%~75%를 소유하는 경우, 이들이 내린 결정은 유효함.</p> <p>예를 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정관의 수정과 보충 + 회사의 개발 전략 + 구성원 의회 의장의 선정, 면제, 또는 해임;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명, 해임, 또는 해고 + 연간 재정 보고서의 승인 + 회사의 정리 또는 파산 + 회사의 최근 재정 보고서에 기록된 총자산의 50% 또는 그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 등

질 의

4. 현행 기업법 상 베트남에 설립 가능한 회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회사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베트남 기업법에 설립 가능한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할 것으

로 보이는 회사의 종류는 크게 1인유한책임회사, 2인이상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3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3가지 회사만이 투자자가 투자액수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이)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장단점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각 형태 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유한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업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든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 감자가 다른 회사에 비하여 자유롭지 못하며(감자 금지), 이익 배당송금에 있어서도 다른 회사 종류에 비하여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인유한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다만 최고 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그 의결정족수는 총 사원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는 점과 그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회사와의 합작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합작계약서에 따른 다소의 운영상 규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만장일치제 등은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 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65%를 기준으로 하나 다른 선진국 법률과 마찬가지로 51%를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접수되어 실제로 2006년 11월에 법률의 개정은 아니지만 국회 결정문을 통하여 주주간(혹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관에 회사의 주주총회(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51%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결정문은 일단 유효하게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모든 의결사항을 51%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사정족수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 1)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1인 혹은 한 개의 회사(이하 1인으로 통일)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원칙은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함이 원칙이며 또 모든 서류 작업이나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자를 허용치 않으므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

로 감자는 설립 후 3년 이후 그리고 회사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금을 감자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절차로서 설립 당시부터 감자를 위한 구조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3년 정도 후에 2인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2인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2007년 발효된 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에서 2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인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자본금을 완납하였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2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도인은 양도지분 차액에 대하여 28%의 지분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실제로 1인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후 제2, 제3의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상기 규정 때문에 제2, 제3의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질 의

5. 베트남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각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연번	서 류	비 고
1	투자승인허가서 신청서	서식

연번	서류	비고
2	기업 정관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3	창립 사원 명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4	창립 주주 명단	주식회사에 해당됨
5	합작 계약서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6	경영협력계약	BCC 형태에 해당됨
7	재정능력 협약서(별도 양식)	투자자가 준비하고 책임져야 함
8	사업 예비 조사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됨
9	임대 계약서(가계약)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10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11	자격 증명서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함
12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법령상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함. 법인의 경우에도 13번의 재무제표와 더불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13	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14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15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16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17	위임장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상동)

질 의

6. 베트남에 100% 외국투자기업 설립 시 접수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부 프로젝트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오염위험 프로젝트를 제외한 통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설립신청서 접수 후 15 영업일 이내에 투자허가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프로젝트의 경우 45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사실상 소요되는 기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며, 다만 한국에서 공증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약 60여만원의(번역 등도 외주를 맡기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며 베트남 현지 서비스 업체에 따라 허가 신청 대행료는 2000불에서 5000불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례 2)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고려함에 있어 많은 경우에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유통업, 시공업, 컨설팅업 등) 실제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호치민이나 하노이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투자신청으로 실제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지연이 발생
- (2) 유통업이나 1급 시공업의 경우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가승인이 없으면 동기간 동안에 실제 허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하노이 Ministry 레벨까지 허가서류가 회람되기 어려워 실제로 업무가 지연됨

(3) 실제 업무를 진행할 사업분야만을 신청하여야 하는 베트남 투자법령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래 혹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분야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사업분야를 의미없이 추가하여 여러가지 사업목적을 개별적으로 검토 받는 경우 실제로 지연이 일어남

질 의

7. 투자장려분야,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가. 투자 장려분야 : 다음 투자법 조항 및 투자법 시행령 부록 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7조 투자 우대 분야

1.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첨단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제28조 투자 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나. 조건부 투자분야 : 다음의 사항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분야들입니다.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다. 투자금지분야 : 투자법 시행령 부록 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1.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2.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3.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II.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4.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5.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6.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8. 인간 복제 실험
- III.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 IV.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12.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

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V.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각종 투자 프로젝트

(참고사항 : 베트남 투자법령집(개정 투자법,기업법 한글본) 원본 파일은 KOTRA 베트남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hochiminh -) 초기 화면 원편 “자료방” 클릭)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 의

8. 수상의 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투자 승인 허가서 발급 이전에 수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목록

사 업	자본금	수상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운송 수단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 국가 항구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 석유의 탐사, 채취 및 공정; 광물의 탐사, 채취 및 공정 -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 카지노의 상업적 운영 - 담배 생산 - 대학 기관의 설립 - 공업 단지, 수출 가공 단지, 첨단기술 단지 및 경제 특구의 설립 - 해상 교통의 상업적 운영 - 우편과 배달, 텔레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급; 전파 전송 네트워크 구축 - 신문과 인쇄 매체의 인쇄 및 배급; 출판 - 독립적 과학 연구 기관의 설립 	상관없음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분야에의 사업, 광물의 공정; 야금 - 철도, 도로 및 내부 수로 하부구조의 건설 - 알코올 음료와 맥주의 생산 및 사업 	15,000억 VND 이하 (US\$ 93,750,000)	필요함

질 의

9. 투자신청서 접수기관 및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 승인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정부기관이 2 개가 있는데, 투자한 프로젝트가 수출 가공 단지과 공업 단지, 기타 공단의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해 있는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 a. 공단외 지역인 경우 지방정부 계획투자국(DPI)
- b. 공단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수출 가공 단지, 공업 단지, 첨단기술 단지, 경제특구) 각 지방정부 공단 관리 위원회(BOM)

정리하면 투자 자본 규모, 위치 또는 투자분야에 따라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류의 접수 및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방 市(省)의 계획투자국은 수출 가공 단지과 공업 단지, 경제 특구, 첨단기술 단지의 외부에 위치한 모든 프로젝트의 투자 승인 허가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의 투자 프로젝트는(결국 각 공단 및 경제, 첨단기술단지) 각 지방 시성 공단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됩니다.

* 지방 시·성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

(DPI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9-3179 - 팩스 : (84-8)829-0817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7 Tran Nguyen Han, D, Hoan Kien, Hanoi
- 전화 : (84-4)826-0257 - 팩스 : (84-8)825-5275

-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25-694 - 팩스 : (84-61)824-935
- ◎ 빈둥성 인민위원회
 - 주소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8-023 - 팩스 : (84-650)825-194
-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2-307 - 팩스 : (84-31)842-021
-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2-502 - 팩스 : (84-64)859-080
- ◎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 전화 : (84-511)810-054 - 팩스 : (84-511)810-056

* 지방 시성 공단 관리위원회

- ◎ HEPZA(호치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3-5218 - 팩스 : (84-8)829-4271
- ◎ HIEPZA(하노이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52, Tue Tinh St., Hanoi
 - 전화 : (84-4)943-0957 - 팩스 : (84-8)943-0764
- ◎ DIZA(동나이성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Lot No 1,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92-378 - 팩스 : (84-61)892-379

- ◎ MBIZ(빈둥성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0-093 - 팩스 : (84-650) 823-984
- ◎ HEPIZA(하이퐁시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1-694 - 팩스 : (84-31) 842-426
- ◎ BIZA(바리아붕타우산업공단 관리위원회)
 - 주소 :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7-359 - 팩스 : (84-64) 858-531

질 의

10. 부동산개발은 조건부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투자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투자허가의 신청 및 발급기관은 변함이 없으며 부동산 개발의 경우 그 성격상 모든 경우에 대상부지가 속한 시(성) 계획투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허가 관청이 계획투자국이라는 사실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모든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계획투자국에 위임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수개의 정부부처 및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계획투자국은 투자신청을 접수하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뒤 모두 승인된 경우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일단 일반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필요서류와 함께 지방 시성 계획투자국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통상은 그 전에 토지의 용도, 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한 후 인민위원회로부터 사업에 관련한 가승인을 받음을 근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후 허가를 위한 필수조건 중 중요한 것이 현 토지사용권자와의 토지사용권 이양을 위한 가계약서입니다.

부동산경영업을 영위하시려는 분의 경우 특히 주의하실 점은 토지의 용도와 도시개발계획이 현재 원하시는 프로젝트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는 상당수의 회사들이 실제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1) **토지확보단계** : 크게 1인 혹은 소수의 베트남 개인 혹은 회사가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가진 경우(직접개발) 과 대상부지에 30 여명 이상의 토지사용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협상이 아닌 토지법 시행령 84호에 기한 수용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수용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토지사용권이 속해있어 정부와의 직접 토지임대에 기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정부임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임대사업의 경우 일단 토지확보면에서는 크게 법적 이슈는 없다고 할 것이며 직접개발의 경우도 토지사용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만 잘 구비한다면 일단 토지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토지사용권자가 맞는지 아니

면 베트남 현지에서 흔히 일어나듯이 중간 중계회사가 토지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토지인 것처럼 접근하여 토지확보절차에서 여러 번 말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용개발의 경우는 토지사용권자가 많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직접 토지계약방식과 정부의 수용절차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토지확보 이전에 정부의 가승인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허가를 먼저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기 두 가지 경우와는 조금 구별됩니다.

(2) 투자허가서 신청 : 원칙적으로 토지가 확보되거나 수용개발의 경우 정부의 가승인이나 도시계획에 의거한 개발토지지정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대상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 즉 투자허가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사업타당성 조사서, 정관자본금에 합당한 재무제표 혹은 잔고증명서, 일반 마스터플랜(1/2000) 등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토지보상 : 1항의 토지확보시에 토지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계약당시에는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후 투자허가서에 따른 스케줄에 의거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2008년 초 현재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고도 편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투자허가서 취소까지 거론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최근 투자허가서에는 투자허가서 발급 후 1년 동안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허가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마스터플랜 및 토지사용권증서의 취득 : 토지보상을 마치고 나

면 회사는 토지보상완료에 대한 확인증을 근거로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승인 받게 되며 그 관할부서는 성 정부의 건축계획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Architecture) 마스터플랜의 신청과 동시에 토지보상완료 서류를 근거로 실제 회사의 이름으로 토지사용권증서(일명 레드북)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정부에 의하여 이미 마스터플랜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토지사용권증서 신청 이전에 마스터플랜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정부 결정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변경작업은 수시로 신청되며 진행되기도 합니다.

(5) 건축허가 :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앞에서 말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

질 의

11. 베트남에서 무역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무역업은 아시다시피 수출, 수입, 유통분야에 속하는 조건부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무역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 및 수입을 업으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업 분야와 수입된 물품 혹은 베트남 내에서 조달한 완제품을 베트남내에서 판매하는 이른 바 유통업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과거 상기 무역업 및 유통업에 대한 설립조건이 WTO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불분명 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2007년 새로 개정된 각종 상법 시행령의 영향으로 현재에는 적어도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설립 가능여부가 명확합니다. 다만 조건부 프로젝트이므로 여전히 신청 시

100%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그 선례가 많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무역업 및 유통업의 설립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역업: 수입업 및 수출업 공히 외국인 100% 투자기업으로 설립이 가능하되 수출업의 경우 매집 및 보관을 위한 별도 보관창고를 운영하지 못함. 수입업의 경우 2008년 초까지는 수입된 물품을 오로지 한 개의 지정된 유통법인에게 판매하도록 제한이 있었으나 2008년 3월 새로운 시행령으로 유통라이센스를 보유한 복수의 법인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조금 더 사업범위가 확장되었음

(2) 유통업: 2009년 말까지 합작의무사업 분야로 2008년 현재 외국인의 지분제한은 없음(즉, 이론상으로는 외국인 99% 지분소유가 가능함). 유통업의 경우에도 실제 도매, 소매 그리고 소매중에서도 상점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Retail로 나눌 수 있는데 Retail의 경우에는 1호점을 투자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설립할 수 있되, 2호, 3호점 이상은 1호점 운영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함

질 의

12. 베트남에 기 진출한 기업입니다. 개정 기업법 및 시행령에서 재등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 투자법, 신기업법에 의하여 과거 외투법상 설립된 회사와는 다른 종류의 회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였던 기 진출기업과 2006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바 정부에서는 기 진출기업을 현재의

기업형태로 전환시킴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진출 기업은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물론 기존의 방식 그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으므로 전환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정될 법률의 모든 중심이 신기업법 상의 기업형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에 의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기간 안에 전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외국투자기업 재등록

1.1 재등록의 경우

연번	최근까지의 형태	새로운 형태
1	1명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1인 유한책임회사
2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기업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3	합작 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4	외국 자본 주식 회사	주식회사

1.2 재등록 서류

서류 이름	비 고
기업의 재등록 신청서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수정된 정관 초안	기업법 조항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투자 허가서의 사본과 변경된 투자 허가서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투자 승인 허가서 발급 기관이 위의 서류 이외의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3 재등록의 경우 새로운 투자 승인 허가서 발급에 관여하는 허가당국과 소요 기간

- 기간: 영업일 15일 이내
- 허가 당국: 시행령 No. 101/2006/ND-CP(2006년 9월 22일 공표)에서 명시한 투자 승인 허가서를 발급하는 허가 당국과 동등한 허가 당국

1.4 재등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 재등록하는 기업은 기존 외투법상 설립된 기업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승계하게 됩니다. 재등록 이전의 미변제 채무, 근로 계약과 기업의 기타 의무사항도 당연히 승계 됩니다.
- 재등록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투자 승인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기존에 등록된 상호, 법인 인감, 은행 계좌와 세금 코드를 유지할 수 있음
 - 기업법과 투자법의 조항에 따른 다른 추가적인 권리 또한 가짐
- 재등록한 기업은 기업법과 투자법 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외국 투자 기업 전환

2.1 전환하는 경우

연번	최근까지의 형태	새로운 형태
1	1명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기업	2인 이상유한책임회사
2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뤄진 100% 외국 소유 기업	1인 유한책임회사
3	합작 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연번	최근까지의 형태	새로운 형태
4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외국투자기업	주식회사(기업법에 명시된 조건과 법령 101의 조건, 즉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FIE)의 소유주가 설립주주여야 한다는 사실과, 이전 FIE의 소유주 1인 이상이 설립 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5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자본기업	유한책임회사(기업법에 만족시켜야함)

2.2 기업 전환의 조건

- 각 전환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법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 소유 자본으로 이뤄진 기업의 소유주는 설립 주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중의 최소한 한 명이 설립 주주로 참여하면 됩니다.

2.3 기업 전환에 필요한 신청 서류

연번	서류 이름	비 고
1	기업 전환 신청서	전환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2	수정된 정관 초안	수정 사항은 기업법 조항과 일치하여야 함
3	기업의 전환 결정	(i) 100% 외국 소유 자본으로 이뤄진 기업의 소유주에 의한 결정; (ii) 합작 투자 기업의 경영진에 의한 결정; (iii) 외국 자본 주식 회사의 주주 총회의 결정
4	투자 허가서 사본과 수정된 투자 허가서	투자 허가서 사본과 수정된 투자 허가서

기업의 전환으로 인하여 기업에 사원이 추가 되는 경우, 위의 신청 서류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여권 또는 법에서 규정한 기타 개인 증명서	새로운 사원이 개인인 경우
설립 결정 사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여권 또는 법에서 규정한 기타 개인 증명서	새로운 사원이 법인인 경우

2.4 기업 전환 승인의 허가 당국과 소요 시간

- 전환은 재등록 할 때 또는 기업이 재등록 한 후에 별도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근무일 30일

2.5 전환된 기업의 권리와 의무

- 전환된 기업은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그대로 승계하며 전환에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채무, 노동 계약과 기업의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 역시 승계합니다.
- 투자 승인 허가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허가 받은 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된 기업은 투자법과 기업법 조항에 근거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경영협력계약(BCC) 투자 승인 허가서로의 변경 등록 업무

3.1 투자 승인 허가서 변경 등록을 위한 신청 서류

- BCC 당사자들에 의해 서명된 투자 승인 허가서로 변경 등록하는 신청서
- 투자 허가서 사본과 수정된 투자 허가서

3.2 새로운 투자 승인 허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 근무일 7일

3.3 BCC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새로운 투자 승인 허가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 BCC 당사자들은 발급된 투자 허가서와 수정된 투자 허가서, 승인된 BCC와 투자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4. 재등록 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협력계약(BCC) 투자 승인 허가서로 변경을 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경우

4.1 재등록 하지 않은 기업의 권리와 의무

- 재등록 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발급된 투자 허가서에 따라 영업을 계속 한다. 업종과 영업기간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 허가서 수정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 기존에 등록한 기업의 상호, 법인 인감, 은행 계좌와 세금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
 - 기업법과 투자법의 조항에 따른 권리를 누리지는 못한다
- 재등록 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투자 허가서에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 기업법, 투자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2008년 7월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2008년 4월말 현재 재등록/전환한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재등록/전환율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합작기업의 경우, 지배권 변동 이슈

- 과거 외국인투자법상 합작기업의 경우 만장일치제가 있었으나, 현행 기업법은 일반의사결정 65%, 특별의결사항은 75% 지분 필요

- 예를 들어, 과거 외국인투자법상 한국측과 베트남측의 지분이 80:20인 경우, 베트남측은 재등록/전환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만장일치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
- 따라서, 합작기업의 경우 지배권 관련 문제로 재등록/전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

○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

- 재등록/전환 절차는 간단하다 할지라도, 회사형태 변경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사항 발생
- 또한, 합작인 경우 새로운 지분율을 정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등의 기준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권장시한내 재등록/전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변경이 안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등록/전환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선택사항으로 현재의 회사형태와 재등록/전환시 회사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13. 토지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행정적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부가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베트남국민 혹은 베트남법인은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

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배치 받고 토지 대장에 토지사용권을 등록한 다음 토지사용권 증명서 (Redbook)를 부여 받음으로써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각 토지종류와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당된 토지사용권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되며, 이러한 토지의 경우 양도양수, 교환, 상속, 임대저당 등 통상의 소유권과 유사한 완전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실제 토지사용권의 정의보다는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가능성이 더 큰 관심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프로젝트별, 투자자의 형식별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히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경우, 정부로부터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장기 임대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투자법인에게도 토지사용권이 부여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와 부동산(아파트 혹은 상가 및 오피스 일부)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구분하셔야 하는데 후자 쪽은 법인이던 개인이던 아직까지 외국인은 소유권의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례 4) 토지사용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베트남에서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받아 실질적인 등기적 혹은 물권적 권한을 가지는 임차권인 토지사용권과 정부가 아닌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 받는 토지임차권에 대하여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 즉,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취득하여야 하나 어차피 같은 임대이므로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는 베트남인이나 혹은 다른 중간 브로커의 설명에 현혹되어 50년 토지사용권과 50년 토지임차권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3) 둘 간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일단 토지사용권의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가 발급되므로 제3자 대항력이 있고 정부의 수용에 의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양도, 판매가 가능하며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지만 토지임차권의 경우 토지사용권자와의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각종 계약적인 관계에 의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 판매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의 경우 외국인은 임차된 토지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공장의 경우 임차된 토지는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질 의

14. 베트남은 서비스업의 투자개방에 대하여 아직 미온적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WTO와 맞물려 업종별 개방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1. 경영 서비스 업종

a. 전문직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법률서비스	- 외국 법률 사무소의 지점 - 외국 법률 사무소의 자회사 - 외국 법률 사무소의 베트남 독립법인 - 외국 법률사무소와 베트남 법률사무소간의 Partnership - 고객을 위해 베트남 법정에서 변론 등 법률행위 및 법적인증서비스 등은 제외
회계, 감사, 부기서비스	없음
세무서비스	가입 후 1년간, 각 건별(Case by case)로 허가하고, 재경부가 서비스 공급자 숫자 결정, 외투 기업의 경우 가입 후 1년간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 제공가능
건축 서비스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기업들은 WTO 가입국의 법인이어야 함
토목, 공학 서비스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 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도시계획 및 도시 조경 설계 서비스	가입 2년 후, 100% 외투 기업 설립이 가능하고, WTO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100% 외투 기업은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기업들은 WTO 가입국의 법인이어야 함
가축병원 서비스	자연인만이 관련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인가축병원 서비스 제공 가능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컴퓨터 관련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법인은 외투법인에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가입 3년 후 지점 설립 가능

c. 연구 개발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자연 과학	없음

d. (운용 서비스 포함하지 않은) 대여 및 리스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항공기	없음
기타 기계 및 장비	미양허

e. 기타 경영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광고 (담배광고 제외)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 형태로 가능.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 외투 출자 한도 제한. 2009. 1. 1.부터 출자한도 제한 폐지
시장조사	가입 후 합작회사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 외투 출자 한도 제한. 2009. 1. 1.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허용
경영컨설팅	없음. 가입 3년 후 지점 가능
경영컨설팅 관련	가입 3년 후 지점 가능. 가입 후 1년간, 합작회사와 경영협력계 약형태 투자 가능. 1년 이후 제한 없음. 상업 중재 등의 서비스는 가입 후 3년간 미양허. 3년 이후 제한없음.
농업, 수렵, 삼림에 관련 부가서비스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회사 또는 경영협력계약(BCC) 형태로만 가능. 합작회사의 법정자본금의 51% 이내로 외투출자 한도 제한

분류	제한 사항
광업 관련 서비스	(제외 사항: 장비, 자재, 화학물 공급, 공급기반 서비스, 해외 및 수상 지원 선박, 숙박, 식당, 헬리콥터 서비스) 가입 후, 합작회사 49%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가입 3년 후, 51% 이내. 그후 2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제조업 관련 서비스	가입 3년 후, 합작회사 외투 50% 이내 가능. 그후 5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과학기술 컨설팅 관련	가입 후, 합작회사 49%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가입 2년 후, 51% 이내. 그후 2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기계 및 장비 수리 보수	가입 후, 합작회사 49%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가입 3년 후, 50% 이내. 그후 5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분류	제한 사항
배송업	책자나 카달로그를 제외한 소형 화물, 서한 등의 특송 서비스 등 포함. 가입 후 5년간, 합작회사 외투 51% 이내 가능. 그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통신서비스	음성 전화, 팩킷 스위치드 정보 전송, 쉐킷 스위치드 정보 전송, 텔렉스, 텔레그래프, 팩스, 영상회의 서비스, 방송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무선 전화,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 포함.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3년간, 베트남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51%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그후 베트남 파트너에 대한 제한 없는 외투지분 65%까지 외투회사 설립 가능. 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3년간, 베트남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49%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그후 베트남 파트너에 대한 제한 없는 외투지분 65%까지 외투회사 설립 가능. 51%지분 투자자가 경영권을 갖음. 경영협력계약 형태의 외국 투자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설립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
비주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외투 70%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외투 49%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분류	제한 사항
부가 가치 서비스	이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 정보 교환, 부가 팩스 서비스, 코드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 처리(전자상거래포함),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3년간, 경영협력계약 또는 외투 51%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그후 베트남 파트너에 대한 제한 없는 외투자분 65%까지 외투회사 설립 가능. 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베트남 통신 서비스 업체와 경영협력계약 또는 외투 50%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51%지분 투자자가 경영권을 있음. 경영협력계약 형태의 외국 투자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설립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
인터넷 접속 서비스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3년간, 베트남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51%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그후 베트남 파트너에 대한 제한 없는 외투자분 65%까지 외투회사 설립 가능. 시설물 기반 서비스: 가입 후 베트남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50%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음향 영상 서비스	영화 생산 서비스: 가입 후, 베트남 영화 생산 서비스 업체와 경영 협력 계약 또는 51%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영화 유통 서비스: 가입 후, 베트남 영화 유통 서비스 업체와 경영 협력 계약 또는 51%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영화 상영 서비스: 가입 후, 베트남 영화 상영 서비스 업체와 경영 협력 계약 또는 51%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베트남의 문화관, 영화관, 이동 상영팀 등은 외국 서비스 업체와 합작이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됨. 녹음 서비스: 미양허

3. 건설 관련 서비스 업종

분류	제한 사항
일반 건설업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 가능.
일반 토목업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 가능.

분류	제한 사항
설치 및 조립업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 가능.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 작업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 가능.
기타 건설 관련 서비스	가입 후 2년간,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 가능.

4. 유통업종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 제외)

분류	제한 사항
유통대리업	가입 후, 합작회사 49%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2008년부터 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2009년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가입 후, 외투업체는 시멘트, 시멘트 벽돌, 타이어(항공기 타이어 예외),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 및 철강, 음향영상 기구, 포도주, 술, 비료 유통 불가. 2009년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유통 가능. 가입 후 3년 이내에 모든 수입/생산 물품 유통 가능. 다수의 유통점 설립은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에 따라 허용
도소매업	상동
프랜차이즈업	가입 후, 합작회사 49%이내로 외투 출자제한. 2008년부터 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2009년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가입 3년 후, 지점(Branch) 설립가능

5. 교육업종

(기술, 자연과학, 경영, 경제, 회계, 국제법, 어학 분야만 가능)

분류	제한 사항
중등교육서비스	미양허
고등교육서비스	(단, 교육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가입 후, 지분 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2009년부터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분류	제한 사항
성인대상 교육 서비스 (대학 등)	상동, 단, 교육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기타 교육기관 (어학원 포함)	상동, 단 교육 내용에 대해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6. 금융 관련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보험 및 보험관련업	(건강 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비생명 분야 보험, 재보험, 보험 중계업, 보험관련 부가서비스업-컨설팅, 계리, 위험측정 등 포함), 100% 외투업체는 법정 보험업(자동차 제3자 책임, 건설 관련, 석유 및 가스 관련 등) 불허. 2008년부터 상기 제한 철폐. 가입 5년 후, 비생명 분야 지점 설립 가능. 단, 재무적 규제사항 있음.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	(단, 베트남 법령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상의 요구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예금, 대출, 리스, 송금, 보증, 수표, 양도성 예금증서, 외환, 자산관리, 신탁, 금융정보 제공 등 서비스 포함 ㄱ) 형태적 제한: - 외국 상업은행 경우: 대표사무소, 지점, 외투 50% 미만의 합작은행, 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외투금융리스회사, 합작금융회사, 100%외투금융회사의 형태로 제한. 2007년 4월부터 100% 외투은행 설립 가능. - 외국 금융회사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금융회사, 100% 합작금융회사, 합작금융리스회사, 100% 외투 금융 리스회사의 형태로 제한. - 외국 금융리스회사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금융리스회사, 100%외투금융리스회사의 형태로 제한. ㄴ) 예치액 제한 가입 후 5년간, 외국은행 지점이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베트남 동으로 예치 받을수 있는 금액은 당해 지점의 납입 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 2007년 1월: 납입자본금의 650% - 2008년 1월: 납입자본금의 800%

분류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월: 납입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 납입자본금의 1,000% - 2011년 1월: 국내은행과 같은 기준 적용 ㄷ) 베트남 은행의 지분 취득 제한 - 외국 금융기관은 베트남 국영은행의 지분취득이 베트남 국내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 베트남의 주식회사 형태의 상업은행의 주식 취득은 당해상업은행 정관자본금의 30% 미만으로 제한된다. ㄹ) 외국 상업은행 지점은 당해 지점 이외의 장소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없다. ㅁ) 외국금융기관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증권업	<p>증권거래, Underwriting을 포함한 증권관련 업무, 자산관리, 금융정보 제공, 자문, 중계 등 부가 서비스 등 포함</p> <p>가입 후 대표사무소 또는 외투 49%미만 합작회사 설립 가능. 가입 5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자산관리업과 기타 부가서비스업 경우, 가입 5년 후 지점 설립 가능.</p>

7. 보건 관련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병원 및 치과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100% 외투회사, 합작회사, 경영협력계약(BCC)형태 가능 - 최소법정자본금: 종합병원급 미화 2천만불, 외래진료의원급 미화 2백만불, 전문의원급: 미화 2십만불.

8. 관광 관련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호텔 및 요식업 여행사	<p>가입 후 8년간, 호텔 건설/보수/인수 등의 투자와 결부되어야 함.</p> <p>지분제한이 없는 합작형태 가능.</p>

9. 오락, 레저업

분류	제한 사항
오락업	극장, 밴드, 서커스 등 포함. 미양허. 단, 가입 5년 후 외투 49% 이하 합작회사 가능.
기타 오락 관련업	전자 게임장 등,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당해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베트남 당사자와의 외투 49%이내의 합작합작회사 형태 가능.

10. 운송 관련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해상운송	<p>- 베트남 국내 운송을 제외한 승객운송, 화물운송</p> <p>(ㄱ) 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회사 설립: - 가입 2년 후, 49%이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합작회사 소속의 선박에 총 선원의 1/3 미만의 외국선원 근무 가능. - 선장 또는 1등항해사는 베트남인이어야 함.</p> <p>(ㄴ) 국제 해상운송을 위한 상업적 주재: - 가입 후, 외투 51%의 합작회사 설립 가능. - 가입 5년 후, 100% 외투회사 설립 가능. - 외투회사는 아래 서비스 제공 가능: + 고객 직접 접촉 또는 예상가를 통한 마케팅 및 영업활동 + 화주를 대리하는 행위 + 필요한 경영 정보 제공 + 세관, 원산지 등과 관련된 서류 준비 + 운송 서비스(베트남 선박을 통한 국내운송을 포함) - 가입 5년 후 아래 서비스 제공 가능 + 회사 대리, 선박 구성, 화물 인수 + 내륙 수송을 위한 협상 및 계약</p> <p>- 가입 시, 외투 합작회사는 5개 업체로 그 수가 제한됨. 그후 매 2년마다 3개 업체가 추가됨. 가입 5년 후, 수적 제한 철폐.</p>

분류	제한 사항
컨테이너 취급서비스	가입 시, 외투 50% 이하 합작회사 가능.
통관서비스	가입 시, 외투 51% 이하 합작회사 가능. 가입 5년 후, 외투지분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컨테이너 적재, 보관서비스	가입 시, 외투 50% 이하 합작회사 가능. 가입 7년 후, 제한 없음.
내륙 수로 운송	승객운송, 화물운송, 가입 시, 외투 49% 이하 합작회사 가능.
항공상품 마케팅 및 영업	항공사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영업가능.
항공기 수리 및 관리	가입 시, 외투 51% 이하 합작회사 가능. 가입 5년 후, 100% 외투 회사 설립 가능
철도운송	승객운송, 화물운송, 미양허. 예외 : 외투 49% 이하 합작회사를 통해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가능. 승객운송, 화물운송
도로운송	- 가입 시, 승객 및 화물 운송 목적의 경영협력계약(BCC) 또는 외투 49% 이하 합작회사 가능 - 가입 3년 후, 시장 수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한 외투 51%이 하 합작회사 가능

11. 기타 운송 보조 서비스

분류	제한 사항
컨테이너 취급서비스	공항 내 서비스 제외 가입 시, 외투 50% 이하 합작회사 가능.
창고, 보관업	가입 시, 외투 51% 이하 합작회사 가능. 가입 7년 후, 제한 철폐.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상동
기타서비스	화주를 대행하는 화물 브로커 서비스, 화물 검사, 무게 측정 및 샘플링, 운송 서류 준비 등 포함 가입 시, 외투 49% 이하 합작회사 가능. 가입 3년 후, 외투 51% 이하 합작회사 가능. 그후 4년 후, 지분제한 없는 합작회사 가능.

(자료원: Vietnam's WTO Commitments)

질 의

15. 투자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인센티브는 주로 면세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혹은 토지사용료 면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투자지역, 투자 종목 그리고 종업원 고용효과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 및 세법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기간산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허가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 면제 대상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세율	적용대상	적용기간	면제기간	감세기간
20%	일반우대산업(A) or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2년	이후 5년간 50% 감세
15%	일반우대산업(A) and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3년	이후 7년간 50% 감세
10%	특별우대산업(AA) or 특별우대지역(BB)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4년	이후 9년간 50% 감세

예) 15% 우대세율 적용받고, 2007년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최초이익이 2008년에 발생했다면 그전까지 0% 적용,
- 최초이익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인 2010년까지 0% 적용,
- 이후 7년간 50% 감세이므로, 2017년까지 7.5% 적용,
- 2018년 우대세율 15%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후인 2019년부터는 정상 법인세 28% 적용

질 의

16. 법인설립 후의 수속은 어떤 것이 있나요?

투자자가 처음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허가서와 동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후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경우 동 투자허가서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다음의 절차를 갖추어 법인설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1) 신문에 설립사항을 공고함
- (2)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에서 법인 도장을 만듦
- (3) 임대 계약서에 서명함
- (4) 본사와 투자 허가서 발급 단체의 주요 직원 등록
- (5) 은행 계좌 개설
- (6)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세무서에 세금을 등록함
- (7) 해당하는 경우, 외국 근로자의 근로-노동 허가서 신청서를 준비함
- (8) 외국인의 이민 등록
- (9) 무역부처에 원부자재 또는 기계에 대한 수입 계획서를 등록함
- (10) 해당하는 경우, 건물의 전문적 설계의 평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함

질 의

17. 베트남 투자 시 공단지역과 공단 외 지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공단지역을 선호하시는 분과 공단 외 지역(특히 베트남 일반기업의 토지)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

실 것이고 그 이유는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하실 점은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공단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시는 경우 베트남법령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사 명의로 부여 받게 되시며 이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업자금 대출 등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공단 외 지역의 경우는 토지사용권자와의 채권임대 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거나(이에 대한 권리 관계는 사례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명의로 다른 베트남인의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며 그 기간도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조속히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일단 토지위에 부속된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통하여 (이른바 임대공장)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후 천천히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베트남 회사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외국인의 인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 5)

A는 베트남 진출기업으로 5년 전 투자허가서를 받은 제조업체이다. A는 최근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인근의 공단 외 지역에 동종 생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기업의 토지와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결국 토지인수작업을 포기한 바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과는 달리 베트남 기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50년 일시납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 외에 토지사용권료 잔여기간 납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처음부터 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베트남기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없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초기부터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베트남 기업들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

(2) 토지의 용도 역시 외국인기업의 경우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농지상태였으므로 용도 전용료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절차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3) 당연히 있어야 할 건물준공필증이나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토지사용권 증빙 서류 등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결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됨) 거래를 시작하여 결국에는 인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처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베트남 기업은 이에도 응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A사의 계약위반이라며 대금지급을 요구한 바 있음

질 의

18. 건설업(사무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베트남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업(정확히 말하면 투자법 상 부동산 경영업)은 조건부 프로젝트에 속합니다. 즉,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어있는 프로젝트이므로 베트남 당국과 관계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영업의 특성상 당연히 토지사용권과 토지의 사용용도가 사업허가 취득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이 가능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관계, 토지작업, 용도변경작업 등 각종 대 관, 민 업무를 담당하여 줄 베트남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 의

19. 베트남에 기 진출한 기업입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허가를 받은 분야와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 기업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회사는 처음 베트남에 사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설법인 설립 없이 타 사업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첫째 외투법상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먼저 신 기업법 상의 회사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하며(질의11번 참조) 전환 후에는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허가 절차는 법인설립과 병행한 투자허가절차와 유사하지만 이 중 대표자, 정관, 자본금 신청 등 법인 설립과 관련된 자료들은 필요치 않게 되며 본국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료도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필요가 없게 됩니다.(신발공장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컴퓨터 부품조립공장을 운영하신다면 임대계약서, 사업계획, 투자의 형태 등 기본 사업관련 정보만 기입하신 후 투자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베트남 당사자와 합작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신 경우 동 합작회사를 이용한 사업확장의 경우 베트남 당사자가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도 합작당사자로 남게 됨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회계관련 규정상 당사자 사이의 배분에 대한 효력은 있을지언정, 세금문제나 기타 자산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하나의 회사의 다른 사업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므로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II. 자본금 납입, 증자, 감자, 지분참여

답변자: 법무법인 로고스

한윤준 변호사

(joon19@gmail.com)

질 의

1.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본금(여기에서는 정관자본금을 의미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결국 “금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된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 기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자본금을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 통화, 금, 토지 사용권, 지식 재산권, 과학기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업 정관에 기록된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기계 혹은 현물자산은 당연히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며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베트남 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 등) 외국발행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 의

2. 자본금 불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본금 납입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신청서에 투자자가 투자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입된 스케줄에 따라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설립 시 회사에 납입된 자본금이 실제 정관 자본금 보다 작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며 추후 정관 자본금

이행 절차가 투자자에 의하여 이행되면 됩니다(1년 이내에).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신청서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가 표기되고 발기인은 발행할 모든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정관자본금과 설립 시 납입되는 자본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평가와 납입완료 시기에 대하여는 기업법의 다음 두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 자산 소유권의 이전

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자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
 - a) 등록된 자산이나 토지 사용권의 경우, 출자자는 국가기관의 수속절차에 따라 자산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을 회사로 이전한다. 출자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b) 자산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출자는 자산양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도증서상에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증서에는 기업의 상호와 본사주소, 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설립 결의서 또는 등록 번호, 회사의 법정 자본금 중 출자 자산의 총 가치 및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산 단위의 수와 종류, 자본으로써 납입된 자산의 총가치, 양도일,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대리인이나 기업의 법적대리인의 서명 날인
 - c) 베트남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의 주식 또는 자산형태의 출자지분은 출자자산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합법적으로 회사로 이전되었을 때, 납입 완료로 간주한다.
2. 개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된 재산은 기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이전된다.

제30조 출자자산 평가

1.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로 출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원, 창립주주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2. 기업 설립 시 출자된 자산의 경우, 모든 사원, 창립주주의 만장일치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되며, 만약 출자자산이 출자시점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사원, 창립주주는 채권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한 평가가 종결된 시점의 출자자산 실제가치와 평가가치 간 차액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3. 회사운영 중 출자된 자산의 경우, 기업과 출자자간 합의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다.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된 자산의 가치는 출자자와 기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출자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출자자 또는 평가기관,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채권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한 평가가 종결된 시점의 출자자산 실제가치와 평가가치 간 차액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질 의

3. 증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자 절차 역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사원의 출자자본 증가, (2)회사의 자산 가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관자본금을 조정, (3)새로운 사원의 출자 등의 3가지 경우에 증자가 인정되며 각 경우 회사 내부에 필요한 결의를 거친 의사록을 사업허가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정관자본금과 투자자 지분비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법 제60조 참조)

1인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새로운 사원의 출자로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의 형태가 2인이상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것을 의미

하므로 신규 사원의 출자의무 발생일 후 15일 이내에 사업허가서 발급기관에 회사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증자 절차는 기존투자자에게 주식의 추가발행, 새로운 투자자에게 모집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실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 의

4. 감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에서 감자를 금지하고 있으며(기업법 제76조 제1항) 2인이상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 하여 (2) 출자자본의 비율에 따라 사원에게 출자자본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 할 수 있으며, (3)다만 상환받은 사원들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의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감자를 결정한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법 제60조 제4항)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사원이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사원 각각의 출자지분
- c) 정관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예정인 자본 금액
- d) 사원총회 의장,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법정자본금을 증자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정이 담긴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정이 담긴 보고서와 가장 최근의 재무제

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외국인 소유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는 독립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사업자등록기관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의 증감 여부를 등록한다.

질 의

5. 지분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의 참여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지분 혹은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당연히 회사의 투자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새로운 사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분참여의 절차적 측면은 상기 4, 5번의 증, 감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6) 지분인수절차

A 비나는 2006년 9월에 신투자법 및 신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 1인유한책임회사이다. 최근 A 비나의 100% 투자자인 한국의 AK사는 A 비나의 지분 90%를 역시 한국회사인 BK에게 양도하려 하며 회사의 상호 역시 B 비나로 변경하려 한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자산실사: 먼저 BK사는 A 비나의 자산을 실사하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양수도 대금을 결정함. 실사결과 A 비나는 20억 정관자본금의 회사로 자본금은 납입완료되었으며 토지가격의 상승 및 다른 조건에 근거하여 회사의 순가치가 30억이 되는 것으로 결정됨
- (2) 계약의 체결: 실사에 근거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되 양수도 대금은 27억으로 기재되면 양수도 대금은 30% 계약금, 50% 중도금, 그리고 20% 잔금으로 결정됨

(3) 투자자변경신청: 베트남에서의 지분양수도는 한국에서와 달리 상기와 같은 실사와 계약의 체결 등으로 사적인 절차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허가관청(계획투자국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양수도 계약서
- 새로운 회사의 정관
- 상기의 경우 1인유한회사에서 2인유한회사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기업형태변경 신청서
- 양수인의 재무증명
- A 비나의 Tax Finalization Report
- AK의 세금환납의무 각서 (AK비나는 투자로 얻은 차액 7억에 대한 28%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짐)
- 그외 새로운 투자자인 BK의 각종 회사 서류 등 법률이 지정하는 투자자변경 필요서류
- 회사사명 변경의 경우 새로운 사명

(4) 이와 같은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3)항의 서류를 심사 한 후 약 30일 후에 새로운 투자허가서 발급의 형태로 지분의 양수도를 승인하게 됨

(5) 이와 같이 사명과 투자자가 변경된 회사는 여전히 동일 세금코드를 갖는 동일 회사이나 실무상, 계좌명의 변경(계좌번호 유지), 회사인감변경, 토지사용권명의 변경 등 완료 후 절차를 거치게 됨

질 의

6. 지분을 넘길때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에서는 현재까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혹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일부 및 전도 양도 동일)공히 자본금 양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분을 매각하려는 기존의 투자자는 본인이 취득한 지분의 가액과 매각하면서 얻은 차액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양도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Ⅲ. 대표사무소 설립

답변자: 법무법인 로고스
한윤준 변호사
(joon19@gmail.com)

질 의

1.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설립 신청서 접수기관 그리고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사무소의 설치는 베트남 무역부의 소관 사항이며 구체적인 업무는 특수한 대표사무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성)인민위원회의 관광 무역국(이하 “무역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설립하고자 하는 시(성)의 무역국에 설립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역부에서 승인한 신청서: 본사 대표이사의 서명
- (2) 본사 설립인가관청에서 발행한 본사 설립서류
- (3) 지난 2년간 본사의 회계감사자료
- (4) 본사 정관
- (5) 대표사무소장의 될 분의 여권사본
- (6) 대표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과의 임대계약서 사본

질 의

2.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등록 조건이 있나요?

- 가. 본사의 사업허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 나. 본사가 설립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 다. 베트남에서의 대표사무소 존속기간은 5년이 원칙이며 5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라. 베트남 투자법 상 사업금지항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사무소의 경우 대표사무소의 설립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질 의

3.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경우 본사에서 파견한 직원과 현지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각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대표사무소의 경우도 임직원의 문제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회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즉, 베트남 직원의 경우 대표사무소장이 대표사무소를 대신 하여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베트남 직원의 임금은 본사에서 송금받은 대표사무실 운영비용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표사무소장과의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소장의 경우는 본사로 부터의 임명장 혹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세금이 부과 됩니다.

첨부 1

재 베트남 외국 사업체의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립을 위한 허가증의 발행, 재발행, 수정, 연장 신청용 표준 양식

(2006년 9월 28일 자 무역부의 11-2006-TT-BTM 전단과 함께 발행됨)

표준양식 MD-1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립을 위한 허가증 발행 요청

...위치와 날짜...

대표 사무소나 지사의 설립을 위한 허가증 발행 요청

수신: 허가증 발행 단체

기업체 상호(설립/기업 등록 증명서의 허가증에 기입된 대로 대문자로 쓰시오)

기업체의 약자(있을 경우)

기업체의 국적

본사 주소(설립/기업 등록 증명서의 허가증에 기입된 주소)

설립/기업 등록 증명서의 허가증 번호

발행 기관 발행일과 장소

감독기관

정관 자본

은행 계좌 번호 은행 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있을 경우)

법적 대리인(공인 대표자)

이름(성과 이름):

직책:

국적:

사업체의 운영 절차 요약: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나 지사 설립을 위한 허가증의 발행을 아래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요청합니다.

대표 사무소나 지사의 상호

상호 약자 (있을 경우)

영문 무역 상호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본사 주소(건물 호수, 번지, 동, 구, 시, 도, 지역 구체적 명기)

대표 사무소나 지사의 운영 부문(운영하는 부문들에 대한 구체적 명기)

대표 사무소나 지사의 회장:

성명(성과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처 : 발행일과 장소

1. 동봉된 지원 파일과 이 요청서의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전적으로 책임질 것
2. 베트남 법의 외국 사업체의 재 베트남 대표 사무소와 지사와 관련된 모든 조항과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립을 위한 허가증에 관한 모든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

이 요청서와 함께 다음의 문서들을 첨부합니다.

1. 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문서
2. 회계 감사 재무제표 또는 동등한 효력을 지닌 자료
3. 사업체의 설립 허가증 사본 (있을 경우)
4. 지사의 설립 허가증 사본
5.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 사장의 (베트남인 개인의 경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의 경우)
6. 대표 사무소나 지사의 본사 임대 계약서 사본

외국 사업체의 공인 대표자
(성과 이름을 명확히 기입 후 사인과 도장)

보충설명:

1. 무역부 또는 무역부서
2. 대표 사무소와 이 사무소가 설립될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쓰시오. (기업체가 하나 이상의 대표 사무소와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대표 사무소나 지사 이름 뒤에 “in Vietnam”이라고 쓰시오. (기업체가 한 개의 대표 사무소나 지사만 가지고 있는 경우)
3. 기업체가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전단의 1조 3항에 의하여 영사의 확인을 받은 베트남어로 번역된 공인된 대표자의 서명을 입증하는, 사업체 설립을 등록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동봉한다.

IV. 세무, 회계

답변자 : Deloitte
최준 회계사
(juchoi@deloitte.com)

질 의

1. 설비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면세처리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외국투자기업이 설비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이 설비가 허가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유형자산을 구성할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투자허가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이 투자가 베트남 정부에서 규정한 투자장려 분야에 속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Appendix I,II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다만, 회사 설립 시 공장 설비용으로 수입되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실무적으로 자세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조항 및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 16.- Tax exemption

Imported goods or exported goods shall be exempt from import tax or export tax in the following cases:

6. Goods imported to create fixed assets of projects entitled to investment encouragement specified in Appendix I or Appendix II to this Decree, investment projects funded wi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ources, which are exempted from import tax, including:

a/ Equipment and machinery;

b/ Special-use means of transport included in technological lines, which are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orker-transporting vehicles, including cars of 24 seats or more

and waterway vehicles;

APPENDIX I

LISTS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PARTICULARLY ENCOURAGED AND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ENCOURAGED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 8, 2005)

I. List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particularly encouraged:

1. Production or processing with 80% or more of the products for export;
2.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forest products (excluding timber) or aquatic products from domestic raw materials, with 50% of products for export;
3. Producing new varieties or breeds with high quality and economic benefits;
4. Agricultural farming, forestation, aquaculture;
5. Producing high-quality steel, alloy, nonferrous metals, special metals, steel cast, porous iron: cast iron metallurgy;
6. Manufacturing machines, equipment and detail assemblies for use in the domains of oil and gas exploitation, mining and energy; manufacturing big-sized elev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metal-working machines and metallurgical equipment;
7. Manufacturing medical equipment used in medical analytical technologies and extracting technologies;
8. Manufacturing equipment for testing food toxins;
9. Producing new materials, rare and precious materials: applying new biotechnologies, and applying new technologies in the manufactur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10. Producing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11. Hi-tech industries;
12. Making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counting for 25% of turnover;
13. Investing in and manufacturing waste-treating equipment;
14. Treating pollutio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treating waste;
15. Producing antibiotic materials;
16. Making investment in which BOT, BTO or BT contracts.

II. List of domains in which investment is encouraged

1. Exploring, exploiting and intensively processing minerals;
2. Producing or processing products 50% or more of which are for export;
3. Producing, processing and trading in exports with a value exceeding 30% of the total value of goods produced and/or traded in by the projects in a fiscal year;
4. Regularly employing 500 laborers or more;

APPENDIX II

LIST OF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SOCIO-ECONOMIC DIFFICULTIES OR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149/2005/ND-CP of December 8, 2005)

Ordinal number	Provinces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socio-economic difficulties	Geographical areas meeting with exceptional socio-economic difficulties
1	Bac Kan		All districts and towns
2	Cao Bang		All districts and towns
3	Ha Giang		All districts and towns
.....			
64	Hau Giang		

질 의

2.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지요?

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 차량이 수입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1번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수입관세의 면세조건이 있는 바, 동 차량이 종업원의 출퇴근에 이용되고 좌석이 24석 이상인 경우에만 수입관세가 면제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 승용차는 면세혜택이 없습니다.

질 의

3. 베트남에서는 기업에 경리장(Chief Accountant)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격요건은 무엇인지요? 외국인도 경리장을 맡을 수 있나요?

경리장을 맡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경리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리장의 직위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해당되므로 자격증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인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 관련 업무 종사 및 교육기관 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경리장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회계 관련 자격증 또는 경험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최소한 1년 이상 수행해야 하는 등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경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질 의

4. 법인세는 몇 %이며 본사 송금 시 문제는 없는지요?

법인세는 순이익금의 28%입니다.

과거의 송금이전세는 폐지되었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의무완료 확인과 채무완제 가능 증명을 세무서에서 득하는 경우 송금 수수료 이외에 다른 세금의 부담이 없이 송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금은 올바르게 신고된 자본금 및 베트남 회계규정 및 기업법에 따른 정당한 이익금만을 의미합니다.

질 의

5. 베트남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이 부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베트남에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형식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supporting documents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실질요건으로서 회사의 business와 관련되어 revenue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항목별 세부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부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비 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범위초과 광고비 및 판촉비, 특수한 경우의 지급이자(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미출자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해당됨) 등이 있습니다.

질 의

6.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3개월 이상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를 위하여 회사는 일정율의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및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일정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소득 대비 회사 및 근로자의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료	합계
회사	15%	2%	17%
근로자	5%	1%	6%

종업원과의 근로계약을 net base로 하는 경우 소득세 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에 대한 납부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 의

7. 베트남어로 번역이 필요하여 전문 번역원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이를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매건 50만동 이상의 번역료 지급시 회사는 10%를 원천징수하여 매월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voucher)을 함께 주면 돈 받은 사람은 연말에 연간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양자간 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의 절차를 구비하면 동 지급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 의

8. 한국의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법인에 용역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또한 계약서 상 원천징수세 부담자가 불분명한데, 계약당사자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 기업실체가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와 법인세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용역의 종류	부가세율	법인세율
1	Trading: distribution and supply of goods, raw materials, supplies, machinery and equipment in Vietnam	1%	1%
2	Services	5%	5%
3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out supply of materials and/or machinery and equipment attached to construction works	5%	2%
4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with supply of materials or machinery and equipment attached to construction works	3%	2%
5	Transportation	1,25%	2%
6	Other production or business activities	2,5% or 1,25%	2%
7	Interest	Exempt	10%
8	Income from royalties	Exempt	10%

말씀하신 컨설팅 용역이라면 위 용역의 종류 중 services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율과 법인세율은 각각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순서는 부가세가 먼저 적용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Case 1) 총 용역대금 USD100,000, 한국의 컨설팅회사와 베트남에서의 세액을 공제하고 송금하기로 합의한 경우:

$$\text{부가세} = 100,000 \times 5\% = 5,000,$$

$$\text{법인세} = (100,000 - 5,000) \times 5\% = 4,750,$$

$$\text{합계} = 9,750$$

Case 2) 순 용역대금 USD100,000, 한국의 컨설팅회사에 베트남에서의 세액과 무관하게 동 금액을 모두 송금하기로 한 경우:

$$\text{법인세} = (100,000/0.95) \times 5\% = 5,263 \text{ (Gross up을 해야하므로 case 1과는 반대로 법인세부터 계산함)},$$

$$\text{부가세} = (105,263/0.95) \times 5\% = 5,540,$$

$$\text{합계} = 10,803$$

질 의

9.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 비용 중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절세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비 지원등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거비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회사와 임대인이고 임차료가 회사에서 임대인에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액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세

대상 소득금액(Gross금액)의 15% 중 작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종업원에게 동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전체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요즘 호치민, 하노이 등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APT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를 급여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금전이 아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동 기숙사의 인당 감가상각비와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5% 중 작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기타 회사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한 교육비 보조금, 학교에 직접 지급된 외국인자녀의 학자금 보조금 및 회사가 직접 구매한 외국인 종업원의 고국 방문 비행기 운임(종업원 가족의 비행기 운임은 과세대상임) 등은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오니, 이러한 부분은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 의

10. 한국에서는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회계감사 수수료도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자산규

모 기준 등은 없습니다.

회계감사수수료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시간(man hour)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규모,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Quality control을 받는 Global Big4 회계법인(Deloitte, PWC, E&Y 및 KPMG)인지, 아니면 베트남 내의 Local 회계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당연히 Global Big4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수수료가 Local 회계법인에 비하여 비싸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background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략적인 감사수수료를 언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회계감사서비스 또한 각 회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1. 우리 회사는 금년 11월에 설립하여 첫 사업연도가 채 2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003년에 발표된 Accounting Law에 따르면 첫 사업연도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하여 회계감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산일은 Investment License의 일자가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 기간을 더한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간주하여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이던지 첫 회계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 의

12.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한 기타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우선 법인세의 경우 일반세율은 28%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종이 베트남의 투자 장려 업종이거나 회사의 위치가 베트남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인 경우 20%(10년간), 15%(12년간), 10%(15년간)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 및 50%의 세금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그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투자기간 동안에는 일반세율인 28%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외국인 적용 소득세율은 베트남에서 1년 중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베트남인		외 국 인	
월급여(VND)	세율(%)	월급여(VND)	세율(%)
0 - 5,000,000	0%	0 - 8,000,000	0%
5,000,000 - 15,000,000	10%	8,000,000 - 20,000,000	10%
15,000,000 - 25,000,000	20%	20,000,000 - 50,000,000	20%
25,000,000 - 40,000,000	30%	50,000,000 - 80,000,000	30%
40,000,000 이상	40%	80,000,000 이상	40%

부가세의 경우 일반세율은 10%이며, 수출품인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생수나 비료생산 등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외국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는 관세, 토지사용 관련 세금, 토지사용권 및 건물취득 관련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질 의

13. 외국투자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과거에는 이윤송금세(세율 3%, 5% 또는 7%)가 있어서 직접 투자로 인해 발생한 기업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였으나 이는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이 해외로 이윤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관련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요구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질 의

14.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마케팅 활동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등의 계산시 어떠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광고선전비, 관촉비, 에이전트 수수료, 브로커 커미션, 회의비 및 접대비 등은 이를 제외한 정상비용(원부재료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10%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판촉이나 광고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용목적은 기재해야 하며 이 제품의 원가는 제조원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조사 및 전시회관련 비용이나 조기 대금지불 거래처, 높은 성과를 낸 대리점, 대량구매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위에서 말한 10%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 의

15.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요?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1. 한 분기에 있어서 월별 누적매입부가세액이 누적매출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되는 재화와 관련된 초과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로 환급이 고려됨
3.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구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a. 신규투자업체가 부가가치세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매출 부가세를 산출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환급세액이 2억동을 초과할 경우 각 분기별로 환급이 고려됨
 - b.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전문화를 위해 투자한 사업자가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간 매입부가세 공제를 한 후 공제되지 않은 매입부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

- 는 매입부가세 잔액은 환급됨
4.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 받지 못한 매입부가 세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5.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있거나 환급에 관한 재무부의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위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매출채권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동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6.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환급신청서: 신청지역, 환급액 및 환급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Form 10-GTGT)
2. 다음 사항에 대한 합계LIST: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기납부 부가세와 매입부가세로서 매출부가세를 초과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
3.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의 계산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LIST (Form 02-GTGT, Form 03-GTGT, Form 05-GTGT)

만약 월별 부가세 신고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환급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LIST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신고한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회사는 환급대상기간의 월별 매입부가세 및 매출부가세, 그리고 수정된 금액을 분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 의

17. 원부자재 수입통관시에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통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가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부자재가 수출재화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경우(국외 상대방과의 수출계약에 의한 경우) 이 수입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관세의 과세가격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if any)입니다.

질 의

18. 수입물품을 사정상 다시 반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입관세 및 관련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되었으나 다시 반송(또는 재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기 납부한 수입관세 및 관련 부가세는 환급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 될 것
2. 동 재화가 베트남에서 생산이나 가공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수리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수입처리가 된 세관과 동일한 세관에서 재수출의 업무가 진행될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요청신청서: 재수출되는 사유 및 재수출 재화의 수량, 종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2. 수입세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3. 계약서: 재수출 상대방과의 문서화된 계약서로서 반송사유 및 반송재화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4. 기타 수출관련 일반서류 등

만약 반송사유가 수입물품이 수입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격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질 의

19.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관세특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3종류가 있습니다.

- 1) 우대세율(Preferential tax rate): 이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MFN”) treatment with Vietnam) 국가

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됨

- 2) 특별우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x rate): 이는 specially preferential treatment with Vietnam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됨(ASEAN 역내국 및 양자 FTA 체결국이 해당)
- 3) 일반세율: 이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며 우대세율의 150%임

이 중 특별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건별 수입 총금액이 USD200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CO; certificates of origin)을 제출해야만 수입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 의

20. 베트남의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건별 지출금액이 VND100,000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즉 회사이름, 주소, TAX CODE, 제공받은 물품과 서비스, 일자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또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21.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을 향후 5년간 공제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사업상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차기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월 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향후 연도별 사용계획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에 개정된 법인세법 Circular 134에 따르면 더 이상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향후 5년간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22. 투자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많다면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투자기업 A가 보유한 베트남 자회사 A'의 지분을 한국의 다른 회사 B에게 매각하는 경우 만약 양도차익이 있다면 지분양도세(Capital Assign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지분양도세 = {양도가액 - (최초투자금액 + 매각관련비용(if any))} x 28%

위 지분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A기업일 것이나, 위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는 양수자인 B가 됩니다. B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해외에서만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징수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B가 이러한 거래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과세당국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B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위 A' 회사가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므로 당연히 베트남의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적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면제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월결손금이 많은 경우에 혹시 이를 최초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지분양도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겠으나, 이월결손금은 위 지분양도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질 의

23.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무관세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또한 사후절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수출용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원재료는 275일 동안 수입관세의 납부가 유예(면제가 아님)됩니다.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세관에 해당 원자재의 수입목적 및 수량 등을 신고하여 납부유예를 받아야 하며, 275일 안에 반드시 제조하여 수출완료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납부유예된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 뿐만 아니라 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세관의 정기적인 실사도 있습니다.

질 의

24. 소요량 증명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베트남에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량 증명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감모율을 3%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원재료 투입대비 수출이 97%를 미달하게 될 경우에 회사는 면제된 관세 등의 추징위험이 있습니다.

질 의

25.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한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입니다. 적법하게 베트남에서 과세권을 갖고 추징한 세액은 한국에서 연말 세무확정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 의

26. 수출용 원부자재를 최종 수출기업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저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한국의 Local 수출과는 달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법에 의한 기본 요건은

- 1) 최종제품이 수출되어야 하며, 최종수출업체가 이를 증명해 주어야 함.
- 2) 임가공계약은 외국의 거래처와 직접 맺어야 함.
- 3) 수출대금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해야함 등입니다.

이러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질 의

27. 베트남에서 골프회원권 및 rounding fee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베트남에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투자허가서상 영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을 구매 한 법인은 해당 골프장의 영업기간(혹은 구매법인의 영업기간이 이보다 더 짧다면 구매법인의 영업기간) 동안 회원권 취득금액을 상각하여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합니다.

2007년도에 발표된 법인세법시행규칙(Circular134)에서는 동상각비용 및 rounding fee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가 아직 베트남인들에게는 보편화된 sports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비는 세법상 business와 무관한 entertainment로 간주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질 의

28. 2009년도부터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가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소득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2009년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은 가장 상위법만 공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규정의 변화는 이러한 하위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비교가 가능할 것이나, 일단 신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동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 소득세법	신 소득세법
이자, 배당, 자산양도소득	언급되어 있지 않음	과세대상에 포함됨. (세율: 이자, 배당소득 5%, 주식양도소득 20% 또는 매매가액 기준 0.1%, 부동산 양도소득 25% 또는 매매가액 기준 2%)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각기 다른 적용구간에 각 구간별로 0~40%의 세율이 적용됨	베트남인과 외국인간 적용구간의 차이를 없애고, 세율은 5~35%로 소폭 인하함.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비거주자의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서 25%의 단일세율 적용	20%로 인하함 인적공제(본인 월 VND 4M, 부양가족 월 VND 1.6M) 및 기부금공제가 신설됨.
근로소득공제	해당내용 없음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고국방문 경비, 자녀교육비 및 주택임차료보조금(근로소득의 15%와 비교하여 작은금액만 과세) 등의 규정이 있음	아직 하위 법령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지는 불분명함.

질 의

29. 베트남 주요 조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베트남 법인세법상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가결산하여 분기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익년 3월말까지 최종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월분의 소득세를 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익년 3월말까지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매월분의 부가세를 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되,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질 의

30. 대표사무소의 경우 법인이 아니므로 직원의 소득세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하는 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세무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베트남 현지 직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별다른 issue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의 경우는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되므로(즉 1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류함)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모두 베트남에 합산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대기업들을 위주로 점점 베트남에서의 세무 risk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한국에서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시 통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한국에서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며, 이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므로, 베트남의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증빙의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베트남 세무서는 신고된 소득금액만큼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즉, 신고된 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으로 간주함)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한국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세무서의 대응방식을 염두에 두고 최초 신고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 의

31. 당사는 한국의 건설회사로서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것은 아니며, 현장만 개설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한 후에 공사비를 받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베트남에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라고 하는 세금인데, 이는 법인세와 부가세로 구분되며, 납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Withholding Method: 이는 시공자가 별도로 베트남에서의 tax code를 부여받지 않고 발주처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래의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면, 통상 납부금액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통상 총 계약금액에서 법인세 2%, 부가세 3%를 원천징수함)

2) Fully VAS Method: 이는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은 후 VAS(Vietnam Accounting System)에 따라 베트남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당기순이익의 28%), 부가세 또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부가세율은 각각 10%가 적용될 것임). 하나의 프로젝트만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하여, 관리비용은 일반 법인처럼 발생하고, 또한 향후 세무조

사 시 장부상의 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두고 세무서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3) Simplified VAS Method: 이는 흔히 Hybrid Method라고도 하는데, 시공사가 tax code를 부여받고 세금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된다는 점 및 부가세 납부방식(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에 있어서 2)와 비슷하나, 2)처럼 Fully 장부기장을 할 필요가 없이 법인세 계산방법은 1)의 경우를 따르는 것입니다(계약금액의 2%). 1)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베트남 내의 하도급비율이 큰 경우 절세효과가 크며, 2)와는 달리 비용인정과 관련한 세무서와의 마찰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V. 노무

답변자: 주호치민 총영사관
장근섭 노무영사
(kchang@molab.go.kr)

질 의

1. 베트남의 법정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며, 실질적인 공장 근로자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베트남은 국내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호치민 등 남부지역에 경제활동의 70%가 몰려 있고,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도로, 전기, 항만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역시 지역별로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08.1월 조정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존(06.2.1)		변경(08.2.1)	
	베트남기업	외투기업	베트남기업	외투기업
하노이, 호치민시내 각 군	전지역 450,000동 (US\$28)	870,000동 (US\$54.38)	620,000동 (US\$38.75)	1,000,000동 (US\$62.5)
- 하노이, 호치민 외곽 지역 - 하이퐁시내 각군 - Quang Ninh성: Ha Long City - 동나이성 : Bien Hoa City, Long Khanh Town, Nhon Trach District, Long Thanh District, Vinh Cuu District, Trang Bom District - 빈증성: Thu Dau Mot Town, Thuan An District, Di An District, Ben Cat District, Tan Uyen District - 바리아붕따우성: Vung Tau City		790,000동 (US\$49.38)	580,000동 (US\$36.25)	900,000동 (US\$56.25)

구 분	기존(06.2.1)		변경(08.2.1)	
기타지역	베트남기업	외투기업	베트남기업	외투기업
	전지역 450,000동 (US\$28)	710,000동 (US\$44.38)	540,000동 (US\$33.75)	800,000동 (US\$50)

다만, 직업훈련을 이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기 임금보다 7%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업훈련이란 간단한 직무훈련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하노이/호치민시 각 군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07만동(미화 58불 상당)이 됩니다.

주요 산업공단 정보, 우리나라 투자 기업의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보면, 공장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미화 80~100불 내외(호치민 인근지역 기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 의

2. 최근 임금등급간에 5%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정부가 07.12.5 외투기업의 임금책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내규정(28/2007/TT-BLDTBXH)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금표상 임금등급(호봉)간 차이를 최소 5% 이상으로 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에도 기업이 임금표를 작성하고 각 임금등급간 차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노동 법령에 의하면 각

기업은 임금표를 작성하여 각 성, 시 노동보훈사회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호봉간 5% 차이를 두도록 하는 동 규정과 함께 각 기업의 임금표를 주재국 정부에 등록하는 제도는 사적 자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외투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희 영사관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동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 규정에 의하면 유해 위험 작업의 경우 일반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5%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 역시 기업의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 의

3. 베트남 하면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많이 거론합니다. 실제로 인력이 풍부하고 우수합니까?

베트남의 총인구는 2006년 기준으로 84백만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06년 인구증가율 1.21%). '05년 통계에 의하면 종전(1975년)이후 출생자(30세 이하)가 전체인구의 63%를 차지하는 대단히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교시점이 '92년을 전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재 베트남에는 1300개의 아국기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리적으로는 호치민시 인근 남부지역에, 산업측면에서는 신발, 봉제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 동안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을 잘 활용하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가 남쪽에 집중되다 보니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과 같은 상당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하노이 인근 북부지방 또는 다낭 인근 중부지방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우수하느냐 문제는 인력수준 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미숙련 기능공들의 경우 손재주가 좋아 여타 다른 동남아 국가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숙련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리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매우 높는데 이는 인구구조상 경험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그 동안 훈련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아국 투자기업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치민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인텔이 시내 5개 우수 공과대학 졸업예정자 1950명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중 90명만이 60점 이상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지니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 기술관리 전문가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8년 한해에만 Nidec, Sankyo, Intel 등 3개 그룹의 신규공장이 가동을 하게 되면 당장 약

10,000명의 고급기술자가 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06년 베트남 노동생산성
은 2,246만동/명(1,408달러/명)으로서 인도네시아 2,650불, 필
리핀 2,689불, 태국 2,721불, 중국 2,869불, 말레이시아 12,571
불, 한국 33,237불, 싱가포르 48,162불, 브루나이 51,500불, 일
본 70,237불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 의

4.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베트남 노동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매년 기업의 생산
및 영업실적, 근로자의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상
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급 기준
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내
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외국투자기업,
베트남 국내기업을 막론하고 공장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최대
의 명절인 쯏(우리나라의 설날연휴에 해당)에 한달분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질 의

5.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자가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1년에 대해 임금의 1/2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퇴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연공수당, 직무수당 등이 있으면 합산)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절도, 횡령, 기술·경영상의 기밀 누설행위 또는 기업의 재산이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근로자
2. 감급(減給)징계를 받은 근로자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 환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또다시 위반 행위를 한 근로자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종료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 의

6. 법정 노동시간,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며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초과금지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보건부에서 정하는 과중, 유

- 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 6~7시간
- 바다, 광산, 기타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해당 부처에서 정하는 시간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은 법적으로 노동시간에 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8시간 근무당 30분간의 휴게시간
-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60분의 휴게시간
-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 근무교대간의 휴게시간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한 시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시간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집회 및 교육시간

초과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나, 그 시간은 1일 4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1년에 30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평일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
- 주휴일 시간외근로 임금은 통상임금의 200% 이상 지급
- 공휴일, 유급휴가일 시간외 근로시 300% 이상

아울러,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호치민시의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5시, 하노이시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 통상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초과 근로한 경우 역시 주간초과근로를 한 경우에 받는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초과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95%(주간초과근로수당 150% x 야간근로수당 13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 의

7.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은 무급입니다. 베트남의 유급공휴일은 신정, 구정, 전승기념일 등 9일이며, 근로자 본인의 결혼(3일), 자녀결혼(1일), 양친, 자녀, 배우자 사망(3일)시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정상 작업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 과중·유해·위험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 종사자의 경우 16일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고용계약 종료, 일방의 근로계약 파기, 기술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직되거나 해직된 경우, 정년퇴직, 사망 등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제도에 의거 출산전후기간 휴가를 가지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출산수당은 사회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간호 등을 위해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 의

8. 베트남에서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고문제는 현지진출 기업이 겪는 가장 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고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 계약 직무 완료, 근로자 사망 등과 같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노동법 제36조)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제38조,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미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집행부의 동의와 같은 다른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생산구조 또는 기술변동으로 인한 해고(제17조), 사업의 인수·합병, 분리 또는 분할

등(제31조) △징계해고(제85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에게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징계해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정규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때
- ② 근로자가 노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위해 징계해고 되었을 때
-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12월 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 ④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부와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생산 감축 및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 ⑤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을 종료한 때

사용자는 위 ①, ②, ③의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 동의를 얻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시 아래와 같은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②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적어도 45일전
- 12월 내지 36월의 근로계약 : 적어도 30일전
- 12월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 근로계약 : 적어도 3일전

징계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해고의 후유증으로 고

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동나이성 소재 아국투자 중소기업인 S사의 경우 '06년 2월부터 한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베트남인을 통역으로 채용(1년 계약)했으나, 절도, 저질 비품 구입 및 중간 커미션, 수금후 개인 착복, 근로자 위협 등으로 '06년 12월 해고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반성하기는커녕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년분치 임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해고예고 등 법적절차 미비,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문서화된 확인서 전무 등으로 사업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베트남 근로자들이 진상을 알고 있지만 사업주를 위해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문서가 발달된 나라이며,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타국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므로 해고와 같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에 앞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질 의

9. 한국의 4대보험 같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고용주세의 내역은 어떻게 되며 지급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베트남에는 의료보험, 사회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양자를 포괄)이 시행되고 있고, '09.1.1부터는 실업보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업보험은 '06.6.29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험법('07.1.1부터 시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10

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5% 상당액,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 상당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질병수당제도, 출산수당제도, 노동재해 및 직업병 수당제도, 연금제도, 사망수당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1차적 치료책임은 사업주에 있고 사망시에도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가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보험기금 고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에 의거 '10년부터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여금이 임금액의 5%→8%(근로자), 15%→18%(사업주)에 달할 때까지 매 2년 마다 1%씩 각각 인상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07~09	10~11	12~13	14~15	≥16
근로자	5%	6%	7%	8%	8%
사업주	15%	16%	17%	18%	18%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임금의 1%,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2%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보험제도는 09.1.1일 시행되며, 보험료는 근로자 1%, 고용주 1%씩 납부하며, 국가에서 1%를 지원하게 됩니다.

질 의

10. 한국인 관리자 또는 기술자가 베트남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문

제가 한국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인 상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베트남의 의료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대도시 소재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송되는 경우 의료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만, 이송하기까지 치료비용은 당사자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투자기업의 현지법인과 계약을 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계약은 한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의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등과 같이 업무 외적인 상해의 경우 한국으로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으로 이송시까지의 제반 비용을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07.2월 중공업 분야 아국투자기업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머리를 다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한국에서 정년을 마치고 베트남 현지법인에 계약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 후에도 간병인 등 지속적인 사후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다행히 회사차원에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료 및 이송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 상해보험을 기업차원에서 가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11.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노조는 우호적인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에 의거 기업 설립후 6개월 이내에 기업내에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이 가능한 한 신속히 설립되도록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투자기업(FDI)의 노조설립율이 35%, 베트남 국내 민간기업의 노조설립율이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기업경영에 우호적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베트남에는 대결적 노사문화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도 아직 형성되기 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관리자가 노동조합장을 맡고 있어 사업주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노동조합은 국가통치조직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되는 전국 조직입니다만, 헌법적 조직이며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은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요구가 한순간에 폭발해서 파업으로 이어지기 전에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2. 베트남에서도 파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최근 노사분쟁 현황은 어떤지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파업은 임금체불 등과 같이 사업주가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조직화된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루, 이틀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하는 정도이며, 합의에 도달하면 곧바로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 노사분쟁 패턴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파업을 통해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베트남 근로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를 수천명씩 고용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베트남 최대의 명절인 쯏 휴가기간을 전후로 파업이 정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트남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베트남 당국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노동법상 파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한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 각계의 비판이 고조되자 최근 파업절차를 단축하고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조항(제14장)을 개정하였습지만, 실질적인 노사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13. 파업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일단 파업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자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당국의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1차적인 기관은 각 성·시의 노동보훈사회국(DOLISA)입니다만, 여기에 지역노동연맹, 경찰 등 치안조직, 공산당 지역조직이 개입하게 됩니다. 노동법상 규정된 파업절차에 불구하고 이들 관계당국(특히 노동보훈사회국과 지역노동연맹)의 중재하에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의 파업은 100% 불법이고, 해결방법 또한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그때 그때 관계당국이 개입해서 중재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법의 파업조항은 현재 상황에서는 파업해결의 준거틀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파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파업의 요구조건, 주요 주동근로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업발생시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 임시휴무를 하는 것도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관계당국의 중재 등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신속하게 동향을 공고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분쟁해결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투자기

업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84-8-824-3310) 노무담당 영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4. 근로자들의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구정을 전후하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파업이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불법파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08.1.30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에 관한 수상령”(11/2008/ND-CP)을 공포 하였습니다.

노동법 제179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파업이 사용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직은 법령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시행령은 이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파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은 베트남 인민법원이 행사 하게 되며, 사업주는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파업을 노동조합이 주도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근로자집단(Labor collective,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집단이 파업을 주도할 수 있음)이 주도한 경우, 그 대표자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생산 및 사업중단으로 인해 직접적

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피해배상액은 최대 3개월분 급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근로자 임금 총액에서 삭감하는 경우에도 매월 임금 총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는 불법파업에 대항할 수단이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동 시행령 제정으로 향후 노사관계에 다소간의 힘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파업이 발생한 경우 동 조항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동 시행령을 근로자 사전 교육에 활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른 불이익 조치와 병행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15.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속문서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노동제도와 문화, 상거래 관습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문제에 대해서는 베트남 노동법 제4장(26조부터 43조까지)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양식 또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

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문서로 할 것인가, 구두로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3개월 미만 계약은 구두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문서계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근로자 특성상 문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를 명확히 밝혀 놓으면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부득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양측 합의하에 제3자가 목격하는 가운데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베트남 노동법은 △12개월 미만 계약 △12~36개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 이렇게 3가지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12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3년 계약, 그 다음에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체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고 문제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견습훈련계약”(일종의 현장훈련계약), “수습계약”이 있습니다. 견습훈련계약을 체결하면 훈련생 및 견습생의 실습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하고, 훈련기간과 견습생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훈련 또는 견습기간 동안 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생산에 참여한 경우 훈련생 또는 견습생은 상호합의한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그 작업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에 앞서 기능 정도에 따라 6일~60일간의 수

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의 급여는 견습훈련계약과 같이 지불하게 되며, 기업에서는 수습계약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질 의

16. 취업규칙이 무엇인지요?

취업규칙은 기업의 내부법령입니다. 노동법규 및 기타 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시간, 기술 및 생산, 경영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은 징계,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기준이 되고, 향후 징계처분의 적정성의 판단근거가 되므로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상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문서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 발표 전에 사업체 내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노동관서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주요내용〉

<p>제장: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효력날짜 제3장: 근로계약과 근무정책</p>	<p>제6장: 권리상충과 회사의 영업비밀, 자산 보호 제19조: 자산 제20조: 양도재산</p>
--	--

제3조: 근무정책과 채용	제21조: 서류관리
제4조: 업무수습기간	제22조: 기밀정보
제5조: 정식노동계약	제23조: 권리상충
제6조: 노동계약해지	제24조: 회사자산 및 자금사용
제7조: 퇴사 전 필요한 절차	제Ⅵ장: 취업규칙 위반 행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및 처리
제Ⅲ장: 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 휴가	제25조: 규칙
제8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26조: 노동규율 - 조사
제9조: 연장근무	제27조: 노동규율 · 처리심사
제10조: 유급휴가	제28조: 규율방법 적용 순서
제11조: 사회보험보조금	제29조: 적용되는 규율성질 확정 규칙
제12조: 무급휴가	제30조: 규율 처리 정도
제13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가	제31조: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견책
제Ⅳ장: 회사 내 질서와 업무 규칙	제32조: 임금인상시기 연장,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으로 더 낮은 임금의 업무위치로 전환 또는 해고
제14조: 근무규칙	제33조: 해고
제15조: 근무순서	제34조: 손해 배상 및 물건책임
제16조: 통신체계	제Ⅷ장: 시행조항
제Ⅴ장: 작업장 내 노동위생과 안전	제35조: 노동자 책임
제17조: 근로안전	
제18조: 근로장소 청결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근로 및 휴게시간, 사업장내의 질서, 산업안전 및 위생기준, 재산 기술 경영기밀의 보호, 취업규칙 위반행위 내용과 동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손해 배상 책임 등이 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 요건과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희 영사관 노무담당 영사에게 연락하시면 취업규칙 샘플을 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17. 약 1000명 정도 고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

우선, 고용사정이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고용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동력 문제는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입지 선정시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귀사와 같이 1000명 정도의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산업공단, 수출가공구에 소재하고 계신다면 공단 인력담당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단 외에 소재하고 계시는 경우 각 지방 노동보훈사회국(DOLISA) 또는 각 지방에서 지정한 인력알선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 남부에 소재한 성(省)·시(市)의 경우 중부 또는 북부 성(省) 등의 협조를 받아 인력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취업알선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근로자의 능력이 보장이 안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18. 직원 복지시설(예 : 기숙사 설립) 지원은 의무사항인지요? 현지에서 평균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베트남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기숙사 등을 포함해서 복지혜택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

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사내 기숙사, 식당, 사내 병원(대기업의 경우 치과까지 설치한 경우도 있음) 등을 설치하여 직원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기업의 지불여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경우 자체식당을 통한 점심식사, 통근보조수당, 탁구장 등 체력단련시설,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탈을 줄이고 이들의 애사심을 유도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 기업과 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복지혜택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 의

19. 베트남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상사주재원으로 약칭하겠습니다)이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수상령(34/2008/ND-CP)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수상령의 영어 번역본이 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vnm-hochiminh.mofat.go.kr) → 경제통상 새소식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허가가 면제됩니다.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외국인
-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member: 근로자가 아닌, 지분 소유자를 의미함)
- 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
-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의 경영진 멤버
- 서비스 관측 목적의 외국인
-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 관련 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상사주재원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일 것
-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 관리직, 최고경영진, 전문기술직일 것(기본적으로 베트남 국민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 기술적,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국한하겠다는 의미임)
-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전과가 없고 형사사건에 소추되거나 형 집행중이지 않을 것
- 모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상사주재원이 근무하게 될 현지법인은 노동허가 발급신청서와 함께, ▲범죄기록증명서류 ▲이력서 ▲전문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자격증, 학위증 등 ▲컬러사진 3장 등을 성, 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합니다.(제출되는 모든 서류 중 민간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저희 영사관, 대사관 영사확인 절차, 베트남어 번역 등 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증 절차를 제외하고 저희 영사관 또는 하노이 대사관 영사확인 절차, 베트남어 번역 등 절차를 거쳐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 서류는 업무개시 최소 20일 이전에 노동국에 노동허가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노동당국은 15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수상령에 의하면 현지 법인은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에 노동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의거하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년이 넘는 경우 만료시점에 맞추어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사주재원이 파견된 기업 및 조직의 경우(즉, 아국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아국 직원을 파견한 경우) 전체 관리직의 최소한 20%는 베트남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조항에 관계없이 각 기업, 조직에 최소한 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질 의

20. 베트남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직원 관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지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므로 현지국가와 현지인에 대해 더욱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진출기업의 한국인 관리자들 중에는 베트남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은연중에 이들의 인격도 함부로 대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과 어울려 가장 충돌이 잦은 문제가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기 전에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웃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흥분해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나라 투자기업인 B사에서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관리자가 발로 툭툭 친 사실이 언론에는 구타, 병원입원 등으로 과장되어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종이로 머리를 가볍게 치는 것도 대단히 모욕적인 구타로 생각하여 크게 문제시 하며,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구타 등 폭력행위는 베트남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여 강력 대응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감정을 자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상 문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특히 징계, 해고 등 꺾끄러운 사안 처리시 보다 융통성이 높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인 현장근로자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수출입/통관

답변자: 대한통운 국제물류
문성수 이사

(ssmoon@korexvn.com)

질 의

1. 베트남의 제조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장설비용 기계류의 경우 면세처리가 되나요?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의 경우 면세처리가 됩니다.

기계류에 대해 면세수입을 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관할세관에 면세신청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각 세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관련서류 제출 후 5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면세 승인을 관할세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면세승인을 받은 투자업체는 면세신청서에 등록된 화물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수입된 화물의 검사 시기 허가된 면세신청서에 근거하여 실 화물과 비교 및 검사 후 최종 면세처리가 됩니다.

세관에 면세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세신청서
-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허가서
- 투자 계획서(INVESTMENT PLAN)
- TAX CODE

질 의

2. 중고 설비를 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의 수입 절차는 일반 무역 목적용 다른 재화 수입 절차와 동일하나 수입관세 면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무역 목적용으로 중고 설비 기계류가 수입 될 경우는 해당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 됩니다.(수입 설비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 받음)

중고 설비기계류 수입에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Original B/L, Original Packing List, Original Invoice, Delivery Order(D/O)
- 수출자와 수입자의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
- 면세 승인서, 투자 계획서(투자 공장설비용 기계류 수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허가서
- TAX CODE

중고 설비기계류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O(Delivery Order) 수령
2. 수입 통관 서류 준비
3. 관할 세관 수입신고
4. 관할 세관 서류 검토
5. 수입면허 취득
6. 관할 세관 검사장으로 보세 운송
7. 관할 세관원 및 품질 검사원의 실화물 검사
8. 수입 통관 완료

질 의

3. 원부자재를 수입코자 합니다.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원부자재 수입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과 일반 무역 목적용 원부자재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절차는 동일하나 수입관세 면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의 경우에도 임가공 수입과 일반 원부자재 수입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가공 수입의 경우 한국에 있는 투자 업체의 본사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것으로 이 경우 임가공 계약서 및 수출품의 소요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득한 후 수입시에는 275일간 관세 지급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수출이 진행 된 후에 관련 면장과 소요량 증명을 첨부하여 소요량 정산을 세관에 신청하여 관세 납부 면제를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일반 원부자재의 수입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 업체에서 직접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일반 무역 과정을 거쳐 공급을 받은 후 수출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임가공 시와 같이 소요량 증명을 첨부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세 환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선입 선출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일반 무역 목적용(판매용)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부자재 수입에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Original B/L Copy, Original Packing List, Original Invoice, Delivery Order(D/O)
- 수출자와 수입자의 판매 계약서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인 경우 투자 기업 관할 세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무한 계약서(Processing Contract)
- Receipt docs form(1,2), Import declaration form(2set), Introduction letter

원부자재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O(Delivery Order) 수령
2. 수입 통관 서류 준비
3. 관할 세관 수입신고
4. 관할 세관 서류 검토
5. 수입면허 취득
6. 관할 세관 검사장으로 보세 운송
7. 관할 세관원의 실화물 검사
8. 수입 통관 완료

질 의

4. Under Value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는 화물의 수입 시 수입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탈법적인 방법이다. 관세부과 시 해당세율에 Invoice Value를 곱하게 되는데 Invoice Value가 낮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도 각 화물의 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지나친 Under Value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기준가격에 따라 관세 지불 명령을 내리므로 이로 인해 곤혹을 겪는 업체가 늘고 있어 언더밸류 관행은 점차 자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질 의

5.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화물은 일반 무역용 수입으로 구분되므로, 이사화물 각각에 해당하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용품은 중고, 신품에 관계없이 신품기준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의

6. 베트남은 같은 제품 수입 시에도 항구마다 담당 세관원마다 관세를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는 제품 및 HS CODE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항구의 담당 세관원마다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HS CODE로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는 각 항구의 담당 세관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수입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관원이 다른 HS CODE로 관세를 책정하여 분쟁이 있을 시에는 베트남의 검사 정부 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 의

7. 통관 관련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통관을 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글쎄요. 효과적인 통관 노하우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화물의 수출입 시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서류는 실물과 차이가 없이 정

확히 기재, 준비해서 최소한의 시비거리를 주지 않고 전문가 또는 경험있는 업체들과 협의하여 적정수준을 인정하고 베트남에서의 통관제도가 완전히 개선되기까지는 오히려 그런 관행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질 의

8. 소요량 증명을 잘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요?

소요량 증명이란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275일간의 관세납부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부자재는 275일내에 생산하여 수출되어야 하며, 증명된 원부자재는 완전한 면세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에 우선 면세로 진행하고 추후 이러한 원부자재가 생산, 가공되어 수출되었음을 세관에 증명하여 완전 면세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및 증명이 부실해지면 초기 면세로 수입된 원부자재의 세금이 추징되며 또한 벌금까지도 발생되어 업체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출입업체의 경우 초기 수출입 시부터 관련 신고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질 의

9. 통관 시 세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및 완제품을 수출하는 투자 기업인

경우는 임의적으로 세관을 선정할 수 없으며, 투자승인을 받은 각 성의 세관이 담당 세관이 됩니다.

일반 무역용(판매용)으로 수입, 수출하는 기업(투자 기업 포함)도 임의적으로 세관을 선정할 수 없으며, 선적 및 하역하는 Port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질 의

10. 면세로 수입된 기계장비중 일부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 후 재수입하려고 합니다. 추가 면세수입이 가능한지요?

면세 수입이 안됩니다. 최초 수입시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으로 면세를 받아 수입된 기계류일지라도 부품이나 부속의 결함으로 인해 반송 및 재수입시 이는 기계의 EQUIPMENT가 아닌 SPARE PART, 즉 부분품으로 구분되어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급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질 의

11. 면세로 수입된 공장설비용 기계류를 현지사정으로 인해 타사로 인도 및 판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계류의 인도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물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는 고정자산 매각이므로 타사로 인도 및 판매 시에는 반드시 초기 수입 시 면세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질 의

12. 초기 투자업체로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유예를 받지 못하여 세금을 내고 수입한 후 이의 가공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이 경우에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가공수입이 아닌 일반 원부자재 수입의 경우입니다. 임가공 수입 시에는 관세유예를 받게 되나 일반 원부자재 수입의 경우 수입시 마다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소용량 증명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서류 제출 후 3주안에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 의

13. 자재를 수입하려고 관할 세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았으나 사정으로 인해 화물의 수령이 늦었고, 나중에 화물을 수령하고자 하니 수입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가요?

수입허가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수입허가서 발급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이 도착되어 있는 부두/공항세관으로부터 보세운송 신청 및 운송, 세관검사까지 끝내야 합니다.

수입허가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위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 발급된 수입허가서는 기능을 상실하며, 화물의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기 발급된 수입허가서를 취소하고 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 의

14. 일부 품목의 수입은 사전에 베트남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인가요?

일반적으로 운반구나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관련 베트남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운반구의 경우 면세를 위해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화학류의 경우에는 면세와는 별개로 위험품의 확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운반구의 경우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에서 승인(CIRCULAR NO 59-07-BTC), 화학류의 경우 MINISTRY OF INDUSTRY & TRADE에서 승인(CIRCULAR NO 01-06)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 의

15. 수입된 화물을 부두에서 운송하는데 시내 통행제한시간에 걸려 화물이 제때 운송이 안 되고 늦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물차의 통행제한시간이 있나요?

예, 호치민시내 운송의 경우 화물차의 통행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치민 인근에 위치한 CY에서 화물을 운송 시 호치민시 외곽에 위치한 CY의(CAT LA,ICD 등) 경우 통행제한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치민 시내 안쪽에 위치한 CY(VICT등)호치민 시내를 통과하는 화물은 통행제한시간에 규제를 받습니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출퇴근 시의 혼잡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통행제한시간은 오전 06시에서 09까지, 오

후 4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며 1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는 호치민 시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질 의

16. 호치민시 외곽에 위치한 투자업체입니다. 화물 수입검사가 공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늘 관할세관 검사장에서 검사 후 화물이 공장으로 이송되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모로 불편이 많습니다. 검사를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기 투자업체의 경우 화물의 수출입 시 모든 화물은 반드시 관할세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검사장에서 모든 화물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약 6개월에서 1년간) 정상적인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수입화물의 경우 공장검사, 수출화물의 경우 검사 면제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초기 공장설비자재 수입 시 매번 관할세관의 검사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면 비용 및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공장설비 기자의 수입 시 공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사유서 및 협조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장검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Ⅶ. 금융

답변자: 외환은행 하노이 지점
홍정렬 부지점장
(jrhong@keb.co.kr)

질 의

1.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인은 은행에서 미달러화 및 베트남동화표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계좌(미달러화) 및 운영금계좌(미달러화 및 베트남동화)로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은 자본금계좌를 통하여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개설 시 필요서류는 개인의 경우 여권사본(원본 여권 지참), 법인의 경우 현지 투자승인서(또는 영업허가서) 원본, 대표자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여권 또는 ID카드) 원본, 인감등록증(경찰서발급) 및 인감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권한 확인 서류

- 현지법인의 General Director인 경우 : 이사회의 임명결의서
- Chief Rep.(사무소장)인 경우 : 본사 인사명령서
- Project Manager인 경우 : 회사의 영문 공증을 받은 Power of Attorney

외국으로부터 계좌 송금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반입 외화의 현금 입금은 1회 기준 7,000불 이하만 가능하며, 입금시 세관에 신고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국내간 이체를 통하여 송금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국내간 이체를 통하여 급여, 보너스를 송금 받거나 또는 현금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달러화의 사용은 수입 물품 및 용역 결제를 위한 해외송금, 외화 입금이 인정된 법인 및 개인 앞 국내 이체, 중앙은행에 등록된 역외차입 원금 및 이자의 해외 지급 또는 베트남 동화로의 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 및 용역결제를 위한 해외송금, 외화입금이 인정된 법인 및 개인 앞 국내 이체, 저축 및 개인 적 소지를 위한 미달러화 인출 또는 베트남 동화로의 환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종류

- 입국시 휴대 입국 신고서
- 급여지급명세서(회사인감 날인) 및 소득세 자진신고서 원본
- 배당결의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면장
- 수입계약서 등

질 의

2. 해외송금액의 제한은 없습니까?

증빙서류, 등록증 등 인정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1년을 초과하는 해외차입금의 이자, 원금상환, 1년을 초과하는 연지급신용장 및 1년을 초과하는 D/A 결제(분할결제포함)의 경우, 사전에 중앙은행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3. 베트남 현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서류, 처리기간 등)

개인대출 및 기업대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각종 보증서(Bid Bond, A/P Bond, P/F Bond, Warranty Bond)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1인 이상의 보증인 입보가 필요하며, 국내보유 부동산 또는 국내 의 본인명의 예금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현지의 부동산 담보대출도 현지 베트남은행에서 감정가의 일정한 비율(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계 은행은 베트남 현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차입신청서, 보증서, 차주 및 보증인 개인신상명세서, 여권 등 실명확인 증표, 부동산담보의 경우 소유권 증명 서류, 감정서, 설정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 및 설정으로 10일 이상 소요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2일~3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대출은 1년~3년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대출과 3년~5년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운영자금대출은 경상운영자금에 사용되며 시설자금은 토지사용권매입, 건물건축비, 기계 및 설비 구입자금 용도로 사용

됩니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인출 시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차주 및 본사(보증인)의 신용도, 영업 및 재무상태, 사업전망,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본사의 보증이나 LOC(Letter of Comfort)가 요구 됩니다. 담보대출은 국내의 본사 예금, 본사 거래은행의 대출지급보증서(Stand-by L/C), 국내부동산(토지, 건물, 기계 등), 베트남 현지 부동산(토지사용권, 건물, 기계 등) 등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신용대출의 경우 5~7일,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감정 등의 절차로 최소 10일 이상 소요됩니다.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선 차입신청서, 이사회결의서, 어음, 본사보증서(본사보증의 경우), 대출약정서, 담보물건에 대한 명세서, 권리증 등 증빙자료, 수입면장(수입기계), 감정서, 법인 투자허가서(영업허가서), 이사회 명부, 정관, 대표이사 확인서류, 대표이사 여권, 시설자금계획표(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과거 3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향후 3~5년 추정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투자안내서(Memorandum), 사업타당성 검토서(Feasibility Study), 현지 사업 승인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부분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주로 신디케이션을 통하여 필요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의 개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스폰서의 지원, 각종 계약상의 권리 양도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안전망들이 필요합니다. 역외 소재 금융기관의 신

디케이션참여는 원천세(한국소재 대주: 10%) 문제가 발생하여(국가소유은행 제외)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Bid-Bond, A/P Bond, P/F Bond 등 각종 지급보증서 발급이 여신심사절차에 따른 심사 후 가능하며, 본사에서 본사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현지소재은행에서 재발급(Re-Issuance)도 가능합니다.

질 의

4.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개인과 법인의 대출, 예금 금리등)

1) 예금상품 및 금리 수준

(2008.5월)

구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여유자금 운용 시(정기예금)1~12개월	
	US\$	VND	US\$	VND
개인	연 0.5%	연 1.5%	연 1.0~3.5%	연 3.8~15%
법인	연 0.5%	연 1.5%	연 1.0~3.5%	연 3.8~15%

- 상기 예금 금리는 개략적인 수준이며 은행에 따라 상이 함

2) 대출금리

(2008.5월)

구분	가사/ 운영자금 대출(1년~3년)		시설자금 대출(3년~5년)	
	US\$대출	VND대출	US\$대출	VND대출
개인	연 3개월 Libor + 1.5% 이상	연 SBV 기준금리 + 1.0% 이상	-	-
법인	연 3개월 Libor + 1.5% 이상	연 SBV 기준금리 + 1.0% 이상	연 3개월 또는 6개월 Libor + 2.5% 이상	연 SBV 기준금리 + 3.0% 이상

- 2008.5월 현재 SBV 기준금리 : 연12%
- 베트남동화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의 150%(현재 연18%)가 이자율 상한임.
- 차주(사)의 신용도, 여신기간, 제공담보의 종류, 거래관계 등에 따라 차등적용

질 의

5. 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품목과 담보 한도는?

주요 담보로는 토지사용권(사용권료 완납 필요), 건물, 기계, 선박, 자동차, 항공기, 예금, 대출보증서(Stand-by L/C) 등이 있으며, 담보 물건에 따라 등록청이 다릅니다.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건물(공장, 주거용건물, 상업용건물)은 담보 소재지 성의 환경관리과(Provincial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계 및 설비, 자동차, 오토바이, 외화,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재고 물품 담보는 거래 및 재산등록청(Registration Center of Transaction and Property)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항공기는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Vietnam), 선박은 해양관리과(The Vietnam Maritime Department)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보 인정 한도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 및 건물(공장, 주거용 및 상업용건물)은 감정가의 70%, 기계 및 설비는 감정가 또는 평가액의 50%입니다. 그러나 담보 인정한도는 은행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 등록을 위해선 소유권 입증서류(등기권리증), 구입계약서, 수입면장 등 제 증빙서류 원본이 있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합니다.

질 의

6. 베트남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으며, 현지 은행과 거래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베트남 주요 은행〉

(2007.12월 현재)

구분	VCB	ICB	BIDV	VBARD
설립일	1963.4.1	1988.3.26	1957.4.26	1988.3.26
자본금	VND 12,981 Mi(est.)	VND 9,338 Mi	VND 14,880 Mi	VND 15,000 Mi(est.)
총자산	VND 196.18 trillion	VND 172 trillion	VND 201.38 trillion	VND 325.80 trillion
점포수	2개센터, 59개 지점, 148개 출 장소	3개센터, 137개 지점, 700개 출 장소	103개지점, 400 개 출장소	2,000 여개지점 및 출장소
특화업무	100여개 국내은 행 및 외국은행 지점 외화결제	e-commerce 최 초 적용	산업금융	소매금융
인터넷뱅킹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상기 은행은 4대 국영은행으로 나름대로의 특화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준으로 보면 선진은행과는 자산규모나 업무 운영 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공동결제망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타행환이 즉시 처리되지 않고 결제은행인 VIETCOMBANK의 E-Banking(U\$ 및 VND통화) 또는 중앙은행의 CITAD(VND통화)를 이용하여 송금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자금이체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됩니다. 단, 중앙은행의 CITAD을 이용하여 하노이 시내에 소재하는 타행으로 VND를 이체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내에 이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송금은 미국의 결제은행을 통하여 베트남 은행으로 이체되거나, 한국계은행의 배

트남 지점을 통하여 베트남 은행으로 이체됩니다. 송금 수수료는 한국에서 송금을 보낼 때, 결제은행에서 이체시, 최종 수취은행에서 지급 시 각각 발생합니다. 최종 수취은행이 베트남 은행의 소규모 지점인 경우 베트남은행 내부의 전산망 미비로 자금 수취시 까지 상당한(3일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환 및 수출입업무의 처리 시에도 보유 미달러화 부족으로 이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착된 선적서류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업무처리 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거래 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국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이 아니어서 베트남 현지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은 외국계 은행의 확인(Confirm)이 요청되고 있으나 한국은행들은 현재 베트남은행에 대한 신용장확인 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였으므로 베트남의 신용등급 및 베트남은행의 발행 신용장에 대한 신인도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의

7. 베트남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지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계은행들은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Vietcombank(VCB), Incombank(ICB), Asia Commercial Bank(ACB), EX-IM Bank, Sacombank, HSBC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를 대부분 취급하고 있으며, VCB는 아멕스카드, 다이너스카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일

정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발급방식은 보증금 예치방식과 신용 발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보증금 예치방식의 경우 카드사용에 대한 담보조로 카드사용 한도의 110% 예금을 제공 하여야 하며, 신용방식의 경우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과거 6개월), 기타 소득 증명자료, 고용주의 보증서 등이 요구됩니다.

질 의

8.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지요?

베트남에는 호치민 및 하노이에 주식거래소가 있어 외국인도 베트남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원(Securities Depository Center)에 주식거래코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주식거래코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사전에 외국인개인투자자정보서 양식을 작성하여 개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대사관 영사 공증(한국 소재의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을 받은 후 베트남 영사과(Vietnam Consula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서 영사 공증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상기 양식은 베트남 증권회사를 통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 서류와 증권회사 계좌개설신청서를 증권회사에 제출하고 별도 약정에 따라 Fax 또는 E-Mail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증권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호치민주식거래소(HOS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장하며, 1회차 08:30am~09:00am기간은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호가방식, 2회차 09:00am~10:15am기간은 연속거래방식, 3회차 10:15am~10:30am기간은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호가방식, 4회차 10:30am~11:00am기간은 시간외거래방식으로 거래됩니다. 하노이주식거래소(HASTC)는 08:30am~11:00am까지 연속거래방식으로 거래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베트남 소재 은행에서 지분참여 및 취득계좌(capital contribution, share purchase account in VND)를 개설한 후 상기 계좌를 중앙은행외환관리과(Department of Foreign Exchange Control)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등록확인서를 베트남은행을 통하여 받은 후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고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질 의

9. L/C 개설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L/C 개설은 기본적으로는 여신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신청사의 신용도 평가, 제공되는 담보 또는 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L/C의 종류에는 일람출급방식(at sight)과 연지급방식(usance)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람출급방식의 경우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하여야 하며, 연지급방식의 경우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연지급(통상 90일~180일)기간 경과후 만기일에 결제합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연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사전에

중앙은행 외환관리과에 연지급방식 수입을 등록하여야 1년 초과되는 시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일람출급방식 L/C 개설의 경우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수입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50%~110%의 보증금이 요구됩니다. 연지급방식 L/C 개설의 경우 일람출급보다는 보다 더 까다로운 신용평가를 받게 되며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보증금 또는 담보가 요구됩니다. 보통 100%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는 개설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수 시에는 인수수수료, 결제시에는 결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많은 바, 개설 시에 보통 월 0.0625%~1.25%의 수수료가 유효기일까지 부과됩니다. 연지급방식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기간 동안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질 의

10. 대미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중앙은행 환율관리제도)

베트남정부의 미달러화에 대한 베트남동화의 환율결정시스템은 관리환율제도(managed floating regime)라고 공식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미 달러화에 연동되는 특성(crawling peg to the US Dolla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동화를 미달러화에 대하여 계속 평가절하시켜 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매일 환율(기준환율)을 결정하여 일반 상업은행에 통보하면 상업은행들은 +/- 1.0% 범위 안에서 대고객 환

율을 결정합니다. 즉 전신환매도율(TT Selling)은 기준환율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신환매입율(TT Buying)은 기준환율-1.0%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중앙은행에서는 상기 변동폭을 2%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날 은행간 거래시장의 가중평균환율이 다음 날의 기준환율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은 전날의 은행간 거래시장의 가중평균환율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질 의

11. 달러계좌에 있는 달러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할 수 있지만, 베트남 동화는 미 달러로 환전이 불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사업정리 또는 근무기간 종결에 따라 베트남을 떠날 때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동화는 모두 소비할 수 밖에 없는지요?

베트남 동화는 미달러화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소득증빙 및 세금납부서, 수입관련서류, 로열티지급서류, 역외차입 관련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셔야 달러화로 환전한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 휴대외환에 대한 신고 등록증을 제시하면 등록증 금액 범위 내에서 달러로 재환전이 가능하며, 주재원의 경우 현지 회사가 확인한 급여명세서와 소득세 자진신고서 원본을 제시하면 월 급여금액에서 현지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국외송금을 위한 달러화 환전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베트남을 떠날 때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에서 생활비를 차감하고, 기간 중 환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달러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소득세자진신고서 원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 정리 시 청산결의서, 청산보고서 및 현지 세금완납증명서, 투자허가기관의 청산허가서를 제시하여 국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2. 금융 소득(주식 양도차익, 예금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0.1%)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나, 향후 증권거래세(0.1%) 또는 양도세(양도차익의 20%) 중 선택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현재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없고 개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선 베트남과 해당국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질 의

13. 은행(현지은행, 외국합작은행, 한국은행지점)에서 지급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발행 요건은 무엇인지요?

Bid-Bond, A/P Bond, P/F Bond 등 각종 지급보증서 발급이 여신심사 절차에 따른 신청사의 신용상태 등의 심사 후 가능하며, 신청사의 본사에서 본사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현지소재은행에서 재발급(Re-Issuance)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순수 신용 또는 본사 보증에 의해 발급되기도 하며, 신청사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이 신청금액의 20%~110% 수준에서 요구되기도 합니다.

질 의

14 베트남에서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 설립하려면 베트남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류	은행(지점)	증권사(49% 현지법인)	- 본국 해당기관의 현지
	SBV (State Bank of Vietnam)	SSC (State Securities Committee)	- 법인 설치 허가서 - 모기업의 10년이상 보
제출서류	- 본국 해당기관의 신청지점 개설허가서 (금감원의 지점개설 허가서) - 모행이 과거 3년간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금감원확인서)	- 인가신청서 - 영업에 필요한 설비,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서 및 토지사용권계약서(안) - 발기인의사록 및 설립결의서 - 대표이사및 이사명부 - 주주명부	- 협업력 에 대한 본국 해당기관의 확인서 - 모기업의 영업, 재무 상태가 양호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본국 해당기관의 확인서 - 최근년 모기업의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점예정지 인민위원회 추천서 - 신청베트남지점에 대한 감독 약속서 (금감원확약서) - 모행의 과거 3년 결산보고서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의 신용평가서 - 모행의 현지자본금 납입 및 신청지점의 모든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서(금감원확인서) - 지점개설신청서 - 향후 3년 영업계획 - 지점장예정자 이력서 - 모행의 정관 - 모행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행의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납입확약서 - 자본금 납입능력 증명서 - 지분투자자 결산보고서 - 정관(안) - 향후 3년 영업계획 - 사내 규칙,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이 최소 미화 20억불 이상된다는 확인서류 - 과거 3년간 중대한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확인서 - 인가신청서 - 정관초안 - 발기인명세서 - 베트남소재은행의 자본금입금확인서(에스크로우계좌) - 향후 5개년 영업계획 - 임직원 명세 및 이력서 - 보험상품 요율표 등 - 모기업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기업법인등기부등본 - 모기업과거 3년 결산보고서 - 모기업의 현지법인대표 앞 POA - 기타
<p>소요기간</p>	<p>신청서 접수 후 90영업일 이내 원칙적 승인서 발급 현실적으로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사무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p>	<p>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원칙적 승인서 발급 현실적으로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나 현재는 신규허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음.</p>	<p>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원칙적 승인서 발급 현실적으로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사무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p>

질 의

15.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금융시장이 양허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는데 금융분야별 현재의 제한사항은 무엇이며, 그 개방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외국계은행의 진출형태는 사무소, 지점, Joint Venture Bank(지분을 50%이하)인데 2007년 4월 1일부로 100% 외국투자은행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0% 외국투자은행의 경우 인가 신청 전년도말 모(母)은행의 총자산이 미화 100억불을 초과해야 합니다.

은행과 여신거래관계(credit relationship)가 없는 일반 베트남 개인으로부터의 베트남동화예금 수취한도가 WTO 가입일로부터 향후 5년에 걸쳐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 2007.1.1부터 : 자본금의 650% 한도 내 수취
- 2008.1.1부터 : 자본금의 800% 한도 내 수취
- 2009.1.1부터 : 자본금의 900% 한도 내 수취
- 2010.1.1부터 : 자본금의 1,000% 한도 내 수취
- 2011.1.1부터 : 베트남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수취 가능

100% 외국투자보험회사의 경우 의무보험영업(statutory insurance business), 즉 자동차보험의 3자 손해보험(motor vehicle third party liability), 건설보험(insurance i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오일·가스 개발 프로젝트보험(insurance for oil and gas projects) 등의 보험영업이 제한되었으나, 2008.1.1부로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외국계증권회사는 사무소, Joint Venture 증권사 (지분을

49%이하)의 형태로만 진출 가능한 데, WTO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100% 외국투자증권사의 설립이 허용됩니다.

질 의

**16.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요?
(진출형태, 규모, 진출연도, 지분율 등 기본정보 포함/하노이, 호치민 전체)**

1) Foreign Bank Branches

국가명	설립일	은행명	하노이	호치민	지점별 자본금액 (US\$M)
호주	1992(하노이) 1996(호치민)	ANZ	0	0	20
	2007	Commonwealth Bank		0	15
중국	1995	Bank of China		0	15
프랑스	1992	NATEXIS		0	15
	1992	BNP		0	15
	1992	CALYON	O(sub)	0	20
독일	1995	Deutsch Bank		0	15
일본	1996(호치민) 1998(하노이)	Bank of TokyoMitsubishi	O(sub)	0	30
	1996(하노이) 2006(호치민)	Mizuho	0	0	15
	2004	SUMITOMO		0	15
말레이시아	1995	Malayan Banking Berhad	0	0	15
네덜란드	1995	ABN Amro	0		15
싱가포르	1995	UOB		0	15
	1998	OCBC			

국가명	설립일	은행명	하노이	호치민	지점별 자본금액 (US\$)
대만	1993(하노이) 1994(호치민)	ChiFon Bank	O	O(sub)	30
	1996	ICBC		O	15
	2002	China Trust Bank		O	15
	2002	First Commercial Bank		O	15
	2005	Cathay United Bank		O	15
태국	1992(호치민) 1994(하노이)	Bangkok Bank	O(sub)	O	15
영국	1994(하노이) 2006(호치민)	Standard Chartered Bank	O	O	15
	1995(호치민) 2005(하노이)	HSBC	O	O	15
미국	1995	Citibank	O	O(sub)	20
	1999	JP Morgan Chase		O	15
	2004	FENB		O	15
라오스	2005	Lao Viet Bank	O	O	2.5

2) Foreign Bank Branches

은행명	진출년도	파트너	자본금(USD M)
INDOVINA BANK	1993	INCOMBANK(50%) P.T. BANK DAGANG NASIONAL(50%)	20
VID PUBLIC BANK	1993	VIDB(50%) PUBLIC BANK BERHAD(50%)	20
VINASIAM	1994	SIAM COMMERCIAL BANK(25%) THAI CP GROUP(25%)	20
LAO VIET BANK	2005	VIDB(50%) LAO(50%)	15
VIET NGA BANK	2008	VIETNAM(50%) RUSSIAN(50%)	46

질 의

17.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는 어떤 은행들이 있는 지요? (진출형태, 규모, 진출연도, 지분율 등 기본정보 포함/하노이, 호치민 전체)

은행명 형태	기업은행 지점	신한은행 지점	신한비나은행 합작법인 (신한:50%,베 트콤은행 50%)	외환은행 지점	우리은행 지점
개점/설립일	2008.3.	1995.6	1993.2	1999.8 (하노이지점) 2002.8 (호치민사무소)	1997.9 (하노이지점) 2006.2 (호치민지점)
주소	다이아몬드플 라자 601호, 34 Le Duan Blvd., Dist. 1, 호치민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 1, 호치민	3-5 Ho Tung Mau St., Dist. 1, 호치민(본사)	대하비즈니스 센터 14층, 360, Kim Ma St., Ba Dinh Dist., 하노이	대하비즈니스 센터 11층, 360, Kim Ma St., Ba Dinh Dist., 하노이
전화번호	84-8-823-2660	84-8-823-0012	84-8-829-1581	84-4-771-6800	84-4-831-5281
지점별/법인 자본금(US\$M)	15	15	30	15	15
영업시간 (12:00~1:00P M:CLOSE)	08:00 am ~ 16:30pm	08:30 am ~ 16:30pm	08:00 am ~ 16:30pm	08:30 am ~ 16:30pm	08:30 am ~ 16:30pm
지점장/은행장	전대성	박인호	행장:노성호	이돈근	하노이:박현규 호치민:권주수
영업망	호치민지점	호치민지점	하노이지점 빈증지점 동나이지점	하노이지점 호치민사무소	하노이지점 호치민지점

*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 호치민에 사무소 운영중

18.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베트남 정부가 각종 긴축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007년도의 물가상승률 12.6%에 이어 2008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이 11.6%에 이르고 있으며, ADB에 의하면 베트남의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15.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 물가수준은 2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4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21.42%나 상승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계속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 요인과 통화량 증대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인상 압력이 혼합되어 단시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년 4월까지의 재정적자도 110억달러에 달해 불요불급한 재정부문 지출을 줄이고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 감축을 위해, 2008.3.17자로 41개 금융기관 앞 만기 364일, 이자율 7.8% 베트남동화채권 20,300 Billion Dong을 강제 인수시킨 바 있으며, 기준율을 4%(1년이상예금),10%(1년미만예금)에서 5%, 11%로 각각 인상 시켰습니다.

대출규제를 통한 유동성 감축을 위해 2008.5.16부로 수출입결제자금 및 역외차입금 상환용도를 제외한 외화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베트남 동화대출보다 이자율에서 유리한 달

러화 대출이 금지됨으로써 시설투자,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한 금리대책의 일환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8.5.19일부터 베트남동화 기준율을 연 8.75%에서 연 12%로 인상했으며, 베트남 동화 예금 및 대출이율의 상한을 기준율의 150%(현재 연 18%)이 내로 하였습니다. 최근까지는 예금이율의 상한이 연 12%였는데 베트남 동화 기준율의 인상에 따라 예금이자율도 연동하여 18%까지 인상 되었으며, 대출이율은 동일자부터 상한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은 매월 베트남 동화 기준율을 고시할 계획이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할 경우에는 즉시 베트남동화 기준율을 수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질 의

19. 베트남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은?

베트남 주식시장이 과열 되었을 때 중앙은행에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잔액을 전체 대출잔액의 3% 이내로 운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직접적인 대출 규제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외화대출규제 및 베트남 동화 채권 강제인수와 같은 유동성감축 정책으로 은행의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베트남동화대출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연율 18%수준), 사실상 대규모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20. 베트남에서 은행거래 시 베트남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4대 국영은행은 전국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동산담보대출도 한국계은행 보다는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현지 부동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상의 문제 및 업무 처리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계은행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으며, 업무 처리시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본사의 주채권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거래할 경우 송금 등 여러가지 점에서 편리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국에 영업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래하시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Ⅷ. 토지, 건축, 임대

답변자: 주베트남 대사관
유성용 건교관
(nraulolo@hanmail.net)

질 의

1.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토지소유와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소유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개발권)은 물론 소유권 자체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에서는, 토지는 국가의 재산이며 모든 국민의 소유에 속한다고 관계 법률(헌법 제17조, 토지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토지사용권: Land Use Right, LUR)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증서를 교부받으며, 토지사용권 기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의 교환,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를 할 권리와 토지사용권에 대해 저당, 보증, 자본으로 납입할 권리를 가지는 등 토지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106조).

질 의

2.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 소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는지요?

먼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2003년 토지법(2004.7.1부터 시행) 제5조 제1항에서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더불어 전체 국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공유물로서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 내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08.5)로서는 임대용 주택에 한해 외국인 소유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승인서상의 투자기간에 한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거 당해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재임차인(전차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분양용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준공후 판매되기 전까지 당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택소유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설부는 총리실과 협의하여 외국인 주택소유 허용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5.22 국회의 승인을 거쳐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2006.6.21 국회를 통

과한 부동산사업법(2007.1 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제10조)상 외국법인과 개인의 부동산사업 범위는 1) 판매 및 임대용 주택과 건축물 건설에 대한 투자, 2) 인프라가 갖추어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상에 인프라 공정 투자 및 토지 개조를 위한 투자, 3)부동산 서비스업(부동산 중개, 평가, 자문, 경매, 광고,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 의

3. 외국인 기업이 베트남에서 건설 또는 건축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투자자로서와 시공자로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투자에 관한 일반법인 투자법과 건설 또는 건축분야에 관한 각종 법률(건설법,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건설 또는 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2007.1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사업법에서는 외국인도 주택과 건축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사업법의 내용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둘째로 베트남에서 건설(건축)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03년 건설법(2004.7월 시행) 제7조와 Decision 87 2004 QD TTG(2004. 5.1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시공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대상과 신청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i) 시공면허 발급대상은 의무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낙찰 또는 지명계약자로서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입찰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베트남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자국 시공사와 파트너십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ii) 시공면허 신청 절차를 보면 낙찰결과 통지서(또는 시공계약서),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 사본, 해당부문 시공실적 보고서 및 재무제표(과거 3년간), 자국사와의 파트너십 또는 하도급 약정서 등을 구비하여 건설부 또는 각 성·시 산하 건설국에 신청하면 됩니다.(법상 허가기간은 20일)
- iii) 시공면허를 발급받은 후 사무소(operational office)를 개설하고 법인의 등록절차에 준하는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iv) 이렇게 발급받은 시공면허는 당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실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4. 토지사용기한 만료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년 토지법 제66조~제69조에서는 각 분야별로 상이한 토지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0항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국가에서 할당 또는 임대해 준 토지가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07.5월 시행된 토지법시행령 84번 32조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사용기간을 최장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70년의 범위에서 수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있으나 연장 여부는 베트남 측 행정기관의 재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 의

5. 토지 사용기한 내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으로의 재양도가 가능한지요?

2003년 토지법(제61조, 제62조, 제106조)상 토지 사용권자는 i) 토지사용권 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ii) 당해 토지가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 iii) 당해 토지사용권이 재판의 대상이 아닌 때, iv) 당해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전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토지가 투자프로젝트의 시행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할당 또는 재임대된 경우 투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엄격히 부합되어야 한다는 규정(토지법 제62조)을 통해 투자허가 승인 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04.10월 발효된 토지법시행령 제181호에서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상기 조치가 부동산 시장 냉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2006.1.27 발효된 토지법시행령 제 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 조건을 다소 완화한 바 있습니다.

즉 도시지역(신규 도시개발 예정부지 포함)에서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주택용지 형태로 가구(households)와 개인에게는 주택건설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하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이 완공된 경우 법인에게서는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회사는 기존 사업승인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완공된 경우 법인은 물론 가구나 개인에게도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 의

6. 외국인(기업)의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업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2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투자자가 임대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투자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투자허가 승인서상 사업기간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번째로는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차받은 후 당해 주택을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과 본인, 전차인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질 의

7. 부동산 관련, 건설·건축사업 추진 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베트남에서도 제도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대출계약 체결 후 관할 토지사무소에 대출 신청/승인 후 토지사용권증서 원본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물대출의 경우 보통 토지사용권과 함께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며 토지 담보대출과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등록국에 신청/승인 후 주택소유권증서 원본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평균 대출금리는 월 1~2%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토지 소유권증서나 주택(건축물) 소유권증서 원본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많지 않고 최근에는 중앙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 의

8. 베트남 주요 건설업체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주요 건설회사들은 국영(또는 관영)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건설부를 비롯하여 교통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설회사들과 그 자회사들이 베트남의 주요 건설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부에는 아래와 같은 산하

국영 건설회사들과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건설회사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몇몇 부실시공 사례를 볼 때 시공능력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시공과정에서의 부조리나 감독소홀도 부실시공의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 국영건설회사는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는 민영화, 모기업은 몇 개 기업을 묶어 대그룹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건설부 산하 국영 건설회사 현황 〉

회사명	연락처 (전화/팩스)	설립연도	홈페이지	자회사 보유현황
Song Da	854-1160/854-1161(하노이)	1961	www.sonda.com.vn	22개
VINACONEX	834-5295/834-5035(하노이)	1991	www.vinaconex.com.vn	85개
Song Hong	210-846-450/210-846-158 (베치)	1958	-	16개
HUD	864-7129/864-7144(하노이)	-	www.hud.com.vn	7개
LILAMA	863-3067/863-8104(하노이)	1958	www.lilama.com.vn	20개
Bach Dang	31-856-251/31-856-451 (하이퐁)	-	-	-
HACC	943-9063/943-9521(하노이)	-	-	-
CONSEVCO	511-813-740/511-22733 (다낭)	-	-	-
LICOGI	854-2363/854-2655(하노이)	-	www.licogi.com.vn	11개
Construction Corporation	8829-2897/8-829-0500 (호치민)	-	-	13개

* 회사명은 약칭임.

*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임.

* 이외에도 VNCC, COMA, IDICO, VIGLACERA, FICO등이 있음

질 의

9. 토지 및 건축물 담당 국가기관은 어디인지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에서 토지 문제는 건설부가 아닌 자원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부는 국토, 토지, 수자원, 광산, 지도측량, 환경 등 6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데 토지를 자원의 하나로 인식하여 자원환경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법 관련사항은 중앙정부의 자원환경부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원환경국(각 시·성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름)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자원환경부가 토지문제를 담당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건설부와 업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기능 조정에 따라 토지를 담당하는 조직이 확대되어, 종전 토지국과 토지통계등록국, 토지조사기획센타가 조만간 토지청으로 확대 발족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설부 및 지방정부의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건설법(2003년 제정, 2004 시행), 주택법(2005년 제정, 2006 시행), 부동산사업법(2006년 제정, 2007년 시행)을 관장하고 있어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부의 주택 및 부동산관리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 의

10. 투자허가 시 받은 공장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요?

2003년 토지법상 토지사용권자는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 재임대에 관한 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6조, 제107조).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허가 시 명시된 사업범위를 벗어난 공장부지 일부의 재임대는 허가조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투자 허가기관이나 토지관리기관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11. 투자허가 시 받은 공장부지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 양도 시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개인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28%입니다.

질 의

12. 건물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나 지분참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지요?

건물 보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를 세분하면 (1)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현재 상가 등(호텔 포함) 건물을 보유한 법인으로서는 당해 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3) 주거시설을 건설하여 위 시설을 임대하거나 분양한 후에 당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존속하고 있는 기업 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업의 형태에 대하여 M&A나

지분참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M&A나 지분참여의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일반 주식양도 양수계약 내지는 지분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투자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질 의

13.베트남의 건설프로젝트의 하청계약을 맺은 경우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형태로 시공 또는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MO를 세우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고,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베트남 내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 외국인 회사로서 현지에서 Contractor Permit(시공허가)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시공허가를 받은 후에 Project Office를 현장에 설치하고 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Contractor Permit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 코드 등이 별도로 발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처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즉, (1) 베트남 회계시스템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 (2) 베트남 회계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원청업체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금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법, (3)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 방법과 같이 하고, 법인세는 단순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오피스 설치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공허가를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 의

14. 베트남의 공시지가는 언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베트남의 공시지가는 2003년 제정된 토지법 제56조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2004.10.29 제정된 Decree No. 182/2004/ND-CP, 2007.7.27 Decree No. 123/2007/ND-CP로 일부 개정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시와 성급 인민위원회(구체적으로는 산하 자원환경부동산국에 위임)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주민의 견을 수렴한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시장가격과 근접하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의 40-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직접비교법, 소득기준법, 공제방법, 잉여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 의

15. 토지 및 건물사용(장기임차) 등 토지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현행 토지관련 세금으로는 토지의 사용에 대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권 이전에 따른 이전등록비가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받을 때,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에 내는 토지임대료는 납부시점의 지역별 공시지가에 사용목적별, 위치별 임대료 효율(0.5-2%)을 곱하여 결정되며 관련기

관과의 계약에 의해 매년 납부 또는 일시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는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이전등록시 납부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취득·등록세와 유사하며 비농업지는 공시지가의 4%, 농업지는 공시지가의 2%에 해당됩니다. 2009년부터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또는 주택양도에 따른 소득에도 과세될 예정인 바, 세율은 양도차익의 25% 또는 최종 매각대금의 2%(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2008.5)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질 의

16. 베트남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으로 베트남내에는 노후 주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 정부(건설부)도 이를 인식하고 노후 주택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7.7 건설부 주관으로 개최된 노후 주택 재건축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 시내의 아파트 중 3.2%만이 1988년 이후 건설되었고 호치민시는 다소 사정이 나아 이 비중이 40%였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하노이시의 경우에는 4-5층짜리 23개동과 1-2층짜리 노후 아파트 10개 동을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통일된 1975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만도 4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규 미비와 인센티브 부족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시 기존 거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재건축 사업에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2007.6월 각 시와 성정부에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독려하는 지시문을 하달한 데 이어, 2007.7에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개량 및 재건축 사업 실시방법에 관한 총리결정을 공포한 바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질 의

17. 베트남의 부동산(토지,주택,건물) 거래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에 대해 정부가 확인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는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 의

18.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절차, 담당부서,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 업체가 건설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투자승인을 받고 시공도 참여하는 경우의 사업추진절차 등을 알아보면 대체로 표와 같습니다.

절 차	내 용	담당부서	담당부서
시장조사	- 베트남 일반현황 - 건설/부동산 현황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사업부지 선정 및 투자형식 결정 ① 100% 단독투자 ② 합작투자시	베트남정부외직접임대계약체결 베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조 건으로 부지를 확보	시·성 인민위원회 (자원환경부동산국)	경우에 따라 다름
기본설계 및 레이 아웃 설계	- 준비서류 · 신청서 · 설계도서 · 부지관련 서류 등	시·성 인민위원회 (도시건축계획국)	2~3개월
토지합법화	-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공 식 확보하는 것으로 뒤의 투자 승인절차전후에 이루어짐 ① 투자승인 이전 · 100% 단독투자의 경우 정 부기관과 임대계약 체결 · 합작투자일 경우 토지사용 권을 가진 합작파트너와 함께 토지사용권을 법정 자본금화 ② 투자승인시 아래 토지관련 서류를 첨부 · 사용 토지의 위치, 면적에 관한 서류 ·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표에 기초한 토지 임차료 · 철거, 보상 방안 · 토지임대 계약서 또는 베 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문서 ③ 투자승인후 · 토지사용권 등록 · 토지관련 재정의무 이행	토지등록사무소	

투자허가 및 법인 설립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법인설립 승인과 동시에 진행	시·성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 DPI) * BOT등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PI)에서 허가 * 주요 사업의 경우 총리의 사전승인 필요	4개월 (서류준비 1개월, 허가 기간 3개월)
법인설립후 일반 허가사항	① 최초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 제출 ② 임원등록 ③ 법인인감 제작 및 신고 ④ 기타, 은행구좌 개설, 법인세무소 코드 등록, 회계책임자 등록 등의 절차가 있음	DPI DPI 관할 경찰국	법인설립 후 60일 이내 15일
법인설립후 건설관련 허가사항	① 자재수입계획 등록 ② 토지사용권 등록 ③ 공사관련 입찰진행 ④ 기술설계 및 건설원가 승인 ⑤ 건설허가(시공허가)	시·성 인민위원회 (무역국) 시·성 인민위원회 (토지등록사무소) 입찰결과, DPI에 보고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1개월 소요 3개월 3개월 5~8개월 1개월
건설착공 및 분양	① 건설 착공 ② 분양(장기임대) - 인프라가 완비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경우 선분양가능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에 통보	

질 의

19. 하노이시의 경우 미당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베트남 주요 지역의 개발계획 및 각종 인프라 계획을 파악하려면 어디를 접촉해야 하는지요?

베트남내 모든 개발계획과 인프라계획을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발계획은 시와 성의 도시계획건축국이나 기획투자국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무관한 개발사업은 건설국이나 교통(공공 공사)국에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의 경우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목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07.9.26 총리가 결정한 '2006-2010 기간 중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목록'이며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역시 총리가 승인한 '2020년까지 주요 교통투자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계획의 경우 각 시와 성정부에서도 투자유치 사업목록을 연간 또는 5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질 의

20.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등

기부 등본에 준하는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 증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 증서는 시와 성(省) 산하 자원환경부동산국에서 발급합니다.

각각의 증서 발급기관이 곧 등기기관이 되며, 이 기관에 열람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요청 자료 발급 의무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법 27조 3항에,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responsible to provide requested information in a sufficient and timely matter”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걸릴 수도 또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이외에 당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은 투자허가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와 동시에 투자허가서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 의

21.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으로부터 건설하도급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통상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하도급을 하려고 할 경우 현지에 Legal Entity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히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시행사가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Project Office를 설치하고(Contractor Permit) 사업 획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업무의 확장 등을 위해서는 현지에 시공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 의

22. 베트남에서 진행중인 우리나라 기업의 건설프로젝트 현황은? (회사명,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내용(아파트, 사무건물, 리조트 등), 규모, 투자형태, 진행상태 등)

우리나라 업체가 투자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개요 및 진행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업허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그 이후 토지보상 및 철거를 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양도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셔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사업명	지역	사업내용	규모	투자형태	진행상황
서울시	홍강개발	하노이시	기본계획 수립	-	하노이시에 대한 지원	- '07.12 용역 완료 - '08.5 홍보관 개관 - '09년중 국가계획으로 승인예정
대우건설 컨소시엄(경남, 코오롱, 대원, 동일하이벨)	Tay Ho Tay 신도시	하노이시	신도시	208ha	외국인 100% 단독투자	- '06.1 투자허가 - '08.4. 1/500 계획승인 - 현재보상절차진행중
포스코건설	북양카인 신도시	하띠이성	신도시	264ha	합작(베측: VINACONEX)	- '06.12 투자허가 - '08.3 토지양도 - '08.6 마케팅센터 착공예정
GS건설	나베신도시	호치민시	신도시	350ha	100% 단독 투자	- '07.5 투자허가 - '09년초 1단계 부지정지 착수예정
GS건설	BT사업	호치민시	도로건설	13,653km	100% 단독 투자	- '04.10 호치민시와 MOU체결

GS건설	BT사업	호치민시	대토부지개발	5개 부지	100% 단독 투자	- '07.12 투자허가 - '08.6 착공
대원	다목적도시	다낭시	신도시	210ha	100% 단독 투자	- '07.9 투자허가 - '08.2 착공
금호건설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호치민시	복합용도(호텔, 오피스,아파트) 건물	13,632㎡	100% 단독 투자	- '96 합작방식으로 투자허가 - '06.6 100% 단독투자로 전환 - '06.10 착공
경남	하노이랜드 마크타워	하노이시	복합용도(호텔, 오피스,아파트) 건물	70층 1개동 47층 2개동	100% 단독 투자	- '07.2 투자자로 선정 (하노이시 입찰) - '07.6 투자허가 - '07.8 기공식
참빛그룹	하노이플라자	하노이시	고급호텔 및 오피스	27층	100% 단독 투자	- '06.11 투자자로 선정 (하노이시 입찰) - '07.5 투자허가 - '07.6 기공식
	피닉스골프장	화빈성	골프 리조트	54홀	100% 단독 투자	- '04. 8 투자허가 - '06.11 일부 개장 - '08.6 전체 개장

IX. 베트남내 거래, 내수

답변자: 쉐라인
정광렬 지사장
(zocopai@hanmail.net)

질 의

1.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형태 중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내수 판매와는 거리가 멀고, 지사, 합작투자기업,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등이 투자증명서 취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제품들로 직판이 아닌, 대리점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내수영업을 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는 직접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사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입의 의미가 크며, 거래 품목 또한 일부 기계나 원료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또는 유통업은 베트남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나 실제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활동 영역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일반 서비스 및 무역,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정부의정서 108/2006/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갖춘 외국투자기업들 또한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내수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제품을 추가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09년부터는 직접판매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내수판매의 경우,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지 베트남인 명의로 로컬회사를 설립, 경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현지인 회사와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원, 영

업지원을 위한 Supervisor로 활동하는 유형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본의 보전과 이익배분 및 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 의

2. 수입한 원자재를 현지 다른 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요?

우선, 수출입 허가과 내수판매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가능한데 수입 시 수입세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내수판매 시, 합법적인 세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거래이고, 판매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원료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규제하거나 독점 관리하는 품목이 아닌지의 여부를 필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질 의

3. 베트남에서 OEM 생산한 제품을 베트남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지요?

베트남 유통업에 대한 외국계 회사의 투자는 베트남과 WTO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2008년에는 지분제한이 없으나 외국계 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를 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100% 단독투자도 가능합니다.

유통경영 형태는 대리점,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등 크게 4종류로 나뉘며, 시멘트, Clinke(시멘트원료), 타이어(항공기 타이어 제외), 종이, 각종 차량, 철강제품, 주류, 비료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산과 수입산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각종 차량도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베트남 정부가 쉽게 사업허가를 내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이 유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국 유통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마당에 외국계 유통회사에 적극적으로 사업허가를 내 줄리는 만무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통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의 직접판매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현지 대리점이나 딜러 등을 통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질 의

4. 베트남 내 거래 시의 주요 대금지불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현금, 외상 등)

품목 및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내수거래 시 외상거래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판매경쟁이 심한 제품일수록 외상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시불거래 또는 외상거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경우는 일시불거래가 가능하나 대리점, 총판 등과의 거래는 1개월~3개월 외상거래가 일반적이며, 항상 기본적인 외상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제품 공급과 외상 상환이 순환됩니다.

외상거래 시에 대금 지급의 지연, 미지급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형태는 현금, 수표, 은행계좌입금, 우체국송금 등이 있으며, 어음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질 의

5. 베트남 내 로컬 L/C 개설이 가능한지요?

베트남에는 한국과 같은 개념의 로컬 L/C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선금지불이 이뤄지기도 하고, 담보를 잡히기도 합니다. 소액거래의 경우, 자필로 작성한 간단한 계약서도 거래 이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 의

6. 베트남 바이어의 영업상태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바이어가 자사를 소개하는 정보는 실상과 차이가 많으므로(특히 회사 자금 및 자본) 크게 신뢰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또는 서비스가 없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동종업계나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직접적인 거래 경험을 통해 파악해야 하며, 신용도를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는 부담 없는 초기

거래가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업체들은 흔히 동종 또는 경쟁 관계의 다른 업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회계사무소나 흥신소, 거래은행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나, 양식화된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조사결과의 정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급히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용도 판단이 서지 않는 바이어와는 잦은 상담을 통해 실제수요가 있는지, 수요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질 의

7. 베트남 내의 주요 물류 운송수단은 무엇이며 하노이·호치민간 운송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베트남 국내의 운송수단은 일반도로, 철도, 수로, 항공 운송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주된 운송수단은 도로, 철도, 수로 운송입니다.

하노이·호치민 구간 운송수단별 소요시간과 평균 운임(40' 컨테이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로(해상)운송: 4~7일 / \$ 650
- 2) 철도운송: 3~4일 / \$ 750
- 3) 육로운송: 2~3일 / \$ 900
- 4) 항공운송: 1일 / \$ 10kg

8. 베트남 내 거래 시, 유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관습 외에도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이며 기본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부딪치고 보자는 자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거래 초기에는 일부라도 선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정부가 선진 경제 시스템의 도입과 자국 경제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 때문에 경제 관련 법규 및 규정이 자주 변동되는 편이므로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법규 및 규정의 변경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베트남 바이어들은 초기에는 제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다가도 견적, 기술자료 등을 받고 난 뒤에 검토 결과에 대해서 아예 일언도 하지 않으며 연락까지 두절하여 공급업체를 안달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한 마음의 여유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실제 구매능력이나 구매 수요가 없었거나, 경쟁업체의 정보조사 차원에서 접근했거나, 또는 희망견적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속전속결은 금물입니다. 최종 공급가격을 너무 일찍 제시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몇 차례의 협상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초기 견적을 제시하시되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초기 견적으로 신용을 상실하는 것을 금물입니다.

실속 있는 거래를 위해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제시한 가격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를 위해 적정가격 이하로의 거래가 필요할 때에는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거래방법에 대한 좋은 조건을 유도한 후에 동의하는 호혜의 조건부거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에게 제공한 자사의 자료와 견적은 관련 업계에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30세 이하의 인구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기업인이나 청년기업인들이 많은 편임을 명심하고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거래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는 행동은 절대금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단기간 내 변화의 폭이 크므로 오늘의 소상(小商)이 불과 1~2년 후에는 거상(巨商)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무역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경제발전을 잠시 뒤로 미루고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계약이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어음(USANCE), D/A, 외상거래 등을 주의하고, 수출보험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 의

9. 외국기업의 지사나 현지법인이 베트남 공기업이나 정부의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지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구매 분야에 따라 외국기업의 직접참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기업을 통해 참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로컬 기업만이 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원조 또는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나 석유화학공업, 철강공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외국기업의 직접 참가가 많은 편입니다. 반면, 일반입찰은 외국기업 제품의 공급권을 위임 받은 베트남 로컬 기업과 연대하여 참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여부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입찰주가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공고나 참가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베트남 각종 입찰정보 공급 서비스 업체:
ASIA INTELLIGENCE CO.,LTD
- Email: intellasia@intellasia.com
- Web site: www.intellasia.com

질 의

10. 국제입찰 참가에 있어서 베트남기업과 외국기업간에 가격조건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요?

베트남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입찰참가 가격조건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분야에 따라 국산화 비율이 높을수록 기본 입찰점수를 높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기업간의 자유 입찰 경쟁일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G7 국가제품 또는 ASEAN 국가 제품의 기본 입찰점수를 높게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본 입찰점수 우대에 대해서는 입찰 안내서류에 주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구비서류 안내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입찰은 품질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하나 지방정부에 의한 입찰 또는 소규모 입찰일수록 입찰주와 입찰참가 기업간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11. 내수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접대문화는?

베트남의 접대문화는 그 형식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첫 상담 시에는 기념이 될 만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이 진전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바이어를 식사 또는 술자리에 초청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와 비교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음주의 강도가 높으며 음주량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입맛에 맞지 않는 토종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으며, 정히 힘들다면 정중히 거절하여도 괜찮습니다. 베트남도 음식과 술을 권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 대낮부터의 음주가 불가피할 수가 있으니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베트남인들은 주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음식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바이어에게 음식을 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오히려 더 정감있게 여기는 편입니다.

바이어 접대 또는 회식시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는 사업에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회식자리가 화기에애하였다고 하여 다음날 당장 계약이 체결된다는 큰 기대를 갖기 보다는 접대는 접대고, 사업은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임해야 하며, 베트남 바이어들은 대단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 의

12. 내수거래 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국영기업
 - 사장 또는 담당자에 대한 커미션을 거래 가격에서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대금결제가 대체로 안정적이며, 한번 거래가 되면 장기 거래가 가능
 - 구매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며, 모험경영은 꺼려하는 편
 - 국가 또는 지방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황에 구매자금의 변동이 있음
- 민영기업
 - 사장 또는 담당자에 대한 커미션을 거래 가격에서 별도로 책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

- 대금결제가 대체로 안정적이며, 한번 거래가 되면 장기 거래가 가능
- 구매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며, 모험경영은 꺼려하는 편
- 국가 또는 지방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황에 구매자금의 변동이 있음

상당 시 구매결정권자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영과 민영기업을 불문하고 사장이 구매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일부 국영기업에서는 중간 실무자가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 의

13. 세관 및 수입관세에 대한 정책은 어떤지요?

내수를 주로 하는 외국기업은 수출가공 외국기업에 비해 세금납부, 회계감사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열 번 잘 넘어가다가도 한번 걸리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이나 세무서는 초기에는 알면서도 모른 체 하다가 갑자기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수입통관 시 통관대행사만을 믿었다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므로 사전에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입관세율 및 부가세율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세관은 HS 코드 해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한 세금에 대해 변경 세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관세에 대한 세관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흥분하거나 격렬하게 항의하기 보다는 세관원이나 대행사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를 문의하고 그 조언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질 의

14. 베트남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합작 경영 형태가 대부분이며, WTO 양허안에 따르면 2009년 100% 외국계 단독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신청은 일반투자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사업분류상에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을 명시하면 됩니다.

베트남에 기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사업 고유의 경영활동은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허가를 받는 형식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질 의

15. 베트남으로 수입 시 품질(안전)검사가 필수적인 품목은 무엇인지요?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수입통관 시에 통관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

야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필히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베트남 정부가 고시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에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산물 및 수산사료, 각종 병충해약, 농산물, 목축사료, 폭발물 원료, 중장비, 건설장비, 안전용품 등이 있습니다.

질 의

16. 베트남에도 인증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인증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의 인증서가 베트남에서도 인정되는지요?

국제 표준화 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투자기업들도 심사를 거쳐 ISO 인증을 베트남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 표준화 기구로는 “TCVN” 라는 인증제도가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약 8천개 이상의 기업들이 TCVN 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TCVN은 각 분야 및 주제별로 국제표준분류와 동일하게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인증한 해외의 각 인증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KS, Q마크 등의 인증이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경우는 없으나 투자 상황과 제품에 따라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인증서 종류 AFQRJOS	인증건수 1
-------------------	-----------

AS	8
ASTM D	44
ASTM E	6
BS	1
CAC	38
CISPR	13
CODEX	41
CORESTA	10
EN	19
GS	5
ICUMSA	3
IEC	136
IP	1
ISO	1,429
ITU	1
JECPA	13
OIML	4
ST SEV	303
VIM	1
합계건수	2,077

질 의

17. 베트남에서 계약서는 주로 베트남어본을 기본으로 한 다는데 영어로 된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지요?

기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베트남과 외국 기업간의 국제무역은 대부분 영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굳이 베트남어 계약서를 추가한다면, 영어와 베트남어 계약 내용이 일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외국어가 그러하듯이 베트남어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공인된 전문 번역사나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내수 거래 시에는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어/영어가 함께 기재된 계약서를 주로 사용하는데, 베트남어와 영어 내용이 동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가 베트남어에 비해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2개 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호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 의

18. 베트남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발효되었으며, 해당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ietnam”(NOIP) 입니다.

- 주소: 384~386 Nguyen Trai St., Thanh Xuan Dist., Hanoi
- 전화: +84-4-8583096 / 8583793 / 8583425

지재권 보호를 받기 위해 특별 보호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도 NOIP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 의

19. 베트남 내수시장의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요?

제조와 유통의 관계를 본다면 아직까지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을 이끌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대규모 유통매장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여전히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매장들도 지역에 따라 소규모 상점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렌털 및 리스산업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과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츰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질 의

20. 베트남은 인접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와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요?

베트남을 기점으로 캄보디아, 라오스와 교역을 한다면 소위 AFTA(아세안 자유무역 지역)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 즉 베트남 원산지 제품을 캄보디아, 라오스로 수출할 때에 AFTA 관세 특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을 답습하는 편이며 베트남의 10~15년 전, 전철을 밟고 있어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잘 연구한다면 향후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교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21. 베트남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 소비계층의 분화가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소비계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요?

베트남은 1% 미만의 상류층과 주로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10%의 중산층이 수입품, 공산품 등의 실질적인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생필품의 경우, 가격 및 품질 종류가 다양하여 저소득층부터 상류층까지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같은 구매 1순위 품목은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소득에 비해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 제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나 도시를 위주로 한 서민들의 씬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월 300달러 이상의 소득자가 내는 개인소득세 납부율이 2007년에 1% 미만인 점을 보면 실제의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개인소득이 서민 소비시장 지출 자금원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마이카와 같은 개발도상국형 소비패턴의 붐이 일고 있어, 베트남에서는 현대적인 소비형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의

22. 한국과 베트남(아세안)은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반대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한국과 ASEAN 국가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AKFTA) 관세율표에 포함된 제품 리스트 및 세율은 한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한국과 ASEAN 국가간에 협정한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면 AKFTA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과 ASEAN 국가간에 체결한 특혜관세 대상 제품과 베트남 정부 및 세관이 발표한 한국산 특혜관세 대상 제품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법은 효력을 발생했으나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은 HS 코드에 따라 수입관세를 적용하기도 하나 세관원이 임의로 해석하여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 현재까지는 AKFTA 관세가 100%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된 양국 관세청장의 회담에서 AKFTA 관세의 정확한 이행과 적용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므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 의

23. 베트남으로 중고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 품목과 수입 요건은 무엇인지요?

베트남 관세율표에 수입이 금지된 중고품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금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품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따라 차이점은 있지만, 기계류의 경

우, 중고기계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적인 자료 등이 필요합
니다. 그리고, 투자목적의 경우에는 중고기계나 설비들을 무
관세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중고품은 중고 봉제기기, 전자제품, 냉동
설비, 가전제품, 의료설비, 실내인테리어제품, 각종 고무·플
라스틱·금속제품(관세율표에 세부적인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음), 각종 IT 장비, 오른쪽 핸들차량, 각종 차량부품, 자전
거, 오토바이, 폐품류 등입니다.

X. 투자기업의 청산, 투자금의 회수

답변자: 법무법인 로고스

한윤준 변호사

(joon19@gmail.com)

질 의

1.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상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베트남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해산”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투자기업의 지분 100%를 타 기업에 양도하여 실질적인 회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청산 혹은 투자금회수와는 약간 구별되지만 감자의 경우에도 그 감자된 금액만큼 투자자가 회수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또 하나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분의 양도 및 감자는 제II편(증자, 감자, 지분참여) 제6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 의

2. 외국인투자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청산은 기업의 해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업자체가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자체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체 해산신청을 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순부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는 경우 그 이해관계자 혹은 기업의 자체 신청으로 해산하는 경우인데 이를 특별히 파산이라 합니다. 일단 파산의 경우는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투자금 회수의 목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채권자들을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해산절차는 베트남 기업법 제159조 이하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1) 회사정관에 기재된 활동기간의 만료
- (2) 사원총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3)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기업법상 규정된 최소 사원 수 혹은 주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투자허가서 취소 등 사업종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변제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자의적 해산과는 별도로 파산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부의 결정에 의한 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 의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기업의 해산결정 혹은 정부의 해산결정 명령
- (2) 기업 자산의 청산: 이 단계에서 회사는 우선변제채권(세무, 임금채권, 담보부채권 등)과 일반채권으로 구분하여 채무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무이행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투자자에게 청산배당이 가능함
- (3) 공고: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허가관청과, 채권자,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에게 공고 되어야 하고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 (4) 기록송부: 공고의무를 마치고 (2)항에서의 계획에 따라 채무이행 및 배당을 마친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투자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투자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대상 목록에서 삭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호치민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고문변호사/ 컨설턴트 명단>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한윤준	법무법인로고스/변호사	84-8-822-7161	joon19@gmail.com	변호사
고문컨설턴트	최 준	Deloitte/회계사	84-8-910-0751	juchoi@deloitte.com	공인회계사
고문컨설턴트	문성수	대한통운국제물류/이사	84-8-821-3211	ssmoon@korexvn.com	물류
고문컨설턴트	유명식	Temesco/사장	84-8-518-0275	msyou@hcm.fpt.vn	前 한국건설사 협의회장
고문컨설턴트	노성호	신한비나은행/법인장	84-8-829-1581	hcmc-cvb@hcm.vnn.vn	호치민투자 기업협의회장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주 1회(매주 금요일) 사전 예약업체에 한해 센터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담당자 : 안유석 과장
 - email : investhcm@kotra.or.kr
 - Tel : 84-8-822-3944
 - Fax : 84-8-822-3941
 - 질의 내용 사전 통보 후 대면 상담
- 상시 Email 상담 : joon19@gmail.com (한윤준 변호사)

◎ 베트남 투자뉴스 (Email Push Service, 매주)

- 베트남 주요 경제기사 번역 등
- 신청 방법 : Email 명기 후 아래 주소로 신청
 - email : investhcm@kotra.or.kr
- 기존 “베트남 투자뉴스”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tra.or.kr/hochiminh -> 초기화면 원편
“베트남투자뉴스(Weekly)” 클릭)

<하노이 무역관>

<하노이 무역관 고문변호사/ 컨설턴트 명단>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Mr.Nguyen Tien Lap	Investment Consult Group	84-4-537-3262	incom@hn.vnn.vn	
고문회계사	김종신	이정회계법인	84-8-930-8114	ejaudit@gmail.com	회계
고문컨설턴트	함진식	외환은행/처장	84-4-771-6781	keb_hanoi@fpt.vn	금융
고문컨설턴트	장순봉	석우건설/사장	84-4-772-3860	seogwoo@vnn.vn	건설/건축
고문컨설턴트	정광렬	셀라인/지사장	84-4-251-2334	zocopai@hanmail.net	내수유통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업체에 한해 센터내 고문 변호사와 대면 상담(영어)
- 담당자 : 박근형 차장
- email : keunhyungp@gmail.com
- Tel : 84-4-946-0511
- Fax : 84-4-946-0519
- 질의 내용 사전 통보 후 대면 상담

◎ 베트남 투자뉴스 (Email Push Service, 매주)

- 베트남 주요 경제기사 번역 등
- 신청 방법 : Email 주소 명기 후 아래로 신청
- email : keunhyungp@gmail.com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 도메인 주소 :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 주요 기능
 - 구인기능 : 한국투자기업들이 '구인' 오피 등재
 - 구직기능 : 베트남인들이 '구직' 오피 등재
- 언어 : 영어/베트남어
- 단순 노동자보다는 고급 인력 위주의 구인구직 알선 사이트

Q&A로 본

베트남 투자 A to Z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민경선

발행처 || KOTRA

인쇄처 || 세광문화사

발행일 || 2008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서초우체국 사서함 101호

전 화 ||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가 격 || 10,000원